

정책연구 2004-25

#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와 과제

이의규 고희원

## 머 리 말

최근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사회복지 분야에서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률의 정비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NGO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미하며,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 관련 법률상의 지원 방향과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NGO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실태 및 NGO 종사자의 직무능력개발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NGO를 총체적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학습망의 하나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며 상호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중심의 네트워크형 학습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NGO의 교육훈련사업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NGO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NGO의 원활한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NGO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NGO 교육훈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NGO 종사자의 직무능력개발 실태도 파악하였다. 둘째, 총체적 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NGO의 원활한 교육훈련사업 및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 사회의 자유로운 네트워크형 학습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NGO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NGO의 원활한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내려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NGO에 대한 관련 문헌연구 및 「한국민간단체총람 2003」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NGO의 교육훈련사업 현황과 교육훈련사업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NGO 종사자, NGO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NGO의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자문 및 협의를 통해 NGO의 원활한 교육훈련사업을 위한 정책적인 과제를 분석 도출하였으며, NGO 종사자를 이 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연계하여 NG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년 기본연구 2004-6번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의규 박사가 책임자로서 고혜원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고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 제공 및 자문에 협조해준 시민단체와 NGO 종사자, NGO 전문가들 그리고 이 연구에 참석한 모든 연구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 金 章 鎬

## 목 차

요 약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분석 · 4

1. 사회교육 관련 · 4
2. 여성 NGO 관련 · 5
3. 자활사업 관련 · 5
4. 선행연구의 시사점 · 8

### 제2장 NGO의 일반적 현황

제1절 NGO의 개념 및 유형 · 9

1. NGO의 개념 · 9
2. NGO의 유형분류 · 12

제2절 우리나라 NGO의 현황 · 16

1. NGO의 설립현황 · 16
2. NGO의 활동영역 · 18
3. NGO의 조직형태 · 19
4. NGO의 교육 활동 · 20

제3절 NGO에 대한 지원형태 · 21

1. NGO의 정부지원 배경 · 21

ii 목차

- 2. 중앙정부의 지원 · 25
- 3. 지방정부의 지원 · 30

제3장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

제1절 NGO의 교육훈련사업 개요 · 33

제2절 NGO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 · 36

- 1. 급여수준 · 37
- 2. 채용 및 승진 · 38
- 3. 노동시간 · 39
- 4. 직무교육훈련 · 39
- 5. 교육훈련과 이·전직 · 41
- 6. 시사점 · 43

제3절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조사 · 45

- 1. 조사 개요 · 45
- 2. NGO의 정부지원에 관한 의견 · 52
- 3. 교육훈련 프로그램 · 54

제4장 NGO의 교육훈련사업 사례

제1절 시민교육 사례: (사)인터넷 시민학교 · 73

- 1. 설립목적 및 현황 · 74
- 2. 교육내용과 강좌구성 · 78

제2절 직업훈련 사례: 여성인력개발센터 · 80

- 1. 재정현황 · 82
- 2. 인력현황 · 85

제3절 지역교육 사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86

1. 설립목적 및 현황 · 86
2. 교육내용과 강좌구성 · 91
3. 재정현황 · 93

제4절 농업교육 사례: 한국유기농업협회 · 95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97

## 제5장 NGO의 교육훈련사업 강화를 위한 과제

제1절 NGO 내부의 과제 · 100

1. 교육훈련전문가 및 학습자 확보 · 101
2. 유관기관간의 연계 강화 · 102

제2절 NGO 외부의 지원 · 102

SUMMARY · 107

<부록 1> NGO 교육훈련사업 실태조사 설문지 · 113

<부록 2> NGO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 124

<부록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126

참고문헌 · 137

## <표목차>

- <표 I-1> 자활사업의 종류 및 실시기관 · 6
  
- <표 II-1> NGO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11
- <표 II-2> NGO 기능에 따른 활동내역 · 14
- <표 II-3> 민간단체의 지역분포도 · 17
- <표 II-4> 우리 나라 NGO의 영역별 분류 현황 · 17
- <표 II-5> 활동영역별로 본 대표적 NGO · 18
- <표 II-6> NGO 조직형태 · 20
- <표 II-7> 1998년도 정부 각 부처 민간지원 현황 · 26
- <표 II-8> 행정자치부 1999년 민간단체 보조사업 유형별 분류 · 29
- <표 II-9> 연평균 재정지원액 · 30
  
- <표 III-1> 교육훈련사업 실시 NGO의 구성 · 34
- <표 III-2> 교육훈련사업 실시 NGO의 지역별 구성 · 34
- <표 III-3> 교육훈련사업 실시 NGO의 교육훈련 대상별 구분 · 35
- <표 III-4> 교육훈련사업 실시 NGO의 활동영역별 구분 · 35
- <표 III-5> NGO 활동가 교육 NGO의 활동영역별 구분 · 36
- <표 III-6> 자원봉사자 교육 NGO의 활동영역별 구분 · 36
- <표 III-7> NGO 종사자 평균 임금(연령별, 성별, 지역별) · 37
- <표 III-8> NGO 종사자 평균 특별수당의 수 · 38
- <표 III-9> 교육훈련일수 · 40
- <표 III-10> 교육훈련 예산 · 40
- <표 III-11> 교육훈련과 이직률(2002년) · 41
- <표 III-12> 교육훈련일수와 이직률 · 41
- <표 III-13> 교육훈련비용과 이직률 · 42
- <표 III-14> 대중매체 보도빈도와 이직률 · 43
- <표 III-15> 조사대상 NGO의 조직형태 · 45

- <표 III-16> 조사대상 NGO 분야 · 46
- <표 III-17> 조사대상 NGO 세부 활동 분야 · 46
- <표 III-18> 조사대상 NGO의 회원수 · 47
- <표 III-19> 조사대상 NGO의 상근직원수 · 47
- <표 III-20> 조사대상 NGO의 상근직원 채용방식 · 48
- <표 III-21> 상근직원 인적자원분포 · 48
- <표 III-22> 연간총액임금 · 49
- <표 III-23> 총예산규모 · 49
- <표 III-24> 예산의 구성 · 50
- <표 III-25> 지출의 구성 · 50
- <표 III-26> 중점사업 · 51
- <표 III-27> 활동분야별 단체의 중점사업 · 52
- <표 III-28>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 · 52
- <표 III-29> NGO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지원 방법 · 53
- <표 III-30>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이유 · 53
- <표 III-31> 정부지원예산 사업의 장애요인 · 54
- <표 III-32> 일반인 및 회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 55
- <표 III-33> 일반인 및 회원 대상 활동분야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 55
- <표 III-34> 일반인 및 회원 대상 농업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56
- <표 III-35> 일반인 및 회원 대상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57
- <표 III-36> 일반인 및 회원 대상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57
- <표 III-37> 일반인 및 회원 대상 여성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57
- <표 III-38> 일반인 및 회원 대상 전문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58
- <표 III-39>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 59
- <표 III-40>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활동분야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 59
- <표 III-41>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농업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60
- <표 III-42>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자원 봉사 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60
- <표 III-4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61
- <표 III-44>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여성 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61



<표 III-45>	회원 및 일반인 교육훈련시 애로사항	· 62
<표 III-46>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시 애로사항	· 62
<표 III-47>	상근직원 및 NGO 활동가 교육훈련시 애로사항	· 63
<표 III-48>	교육훈련생 대상 만족도나 요구조사 실시여부	· 64
<표 III-49>	교육 담당 상근직원 여부	· 64
<표 III-50>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65
<표 III-51>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사료	· 65
<표 III-52>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사 충원방식	· 66
<표 III-53>	향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계획 유무	· 66
<표 III-54>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	· 67
<표 III-55>	대상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	· 67
<표 III-56>	사회보험 및 퇴직금 제도 도입	· 68
<표 III-57>	직원 및 NGO 활동가 대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	· 68
<표 III-58>	실무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69
<표 III-59>	국제교류 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70
<표 III-60>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70
<표 IV-1>	강좌의 구성	· 77
<표 IV-2>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주체	· 80
<표 IV-3>	재정수입 항목별 비중	· 83
<표 IV-4>	과목별 지출 비중	· 83
<표 IV-5>	사업별 지출 비중	· 84
<표 IV-6>	직원활용현황 및 연수	· 85
<표 IV-7>	직원의 투입 구성현황	· 86
<표 IV-8>	재정수입 항목별 비중	· 94
<표 IV-9>	재정지출 항목별 비중	· 95

## 【요약】

### 1. 연구의 개요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사회복지 분야에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이 최근에 와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률의 정비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NGO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미하며,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NGO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실태 및 NGO 종사자의 직무능력개발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NGO를 총체적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학습망의 하나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학습하고 공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며 서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중심의 네트워크형 학습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NGO의 교육훈련사업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NGO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NGO의 원활한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NGO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NGO 교육훈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NGO 종사자의 직무능력개발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할 것이다. 둘째, 총체적 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NGO의 교육훈련사업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NGO는 경제단체인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을 제외한 일반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다.

## 2. NGO의 교육훈련 현황

「한국민간단체총람2003」에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여 목적사업이 인력 개발 또는 교육훈련, 인력양성, 연수 등인 NGO를 추출하였다.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10,000개의 단체 중 290개의 NGO가 이 범주에 속하였다. 이 중 활동영역이 시민사회 부문인 경우가 11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사회서비스로서 71개소였다.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NGO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 전북 순이었으며, 이중 일반인 대상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NGO는 140개소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의 123개 NGO를 대상으로 조사된 NGO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살펴보면, NGO 직원의 교육훈련 일수는 총 5,390일로 한 사람당 4.94일로 나타났다. 교육일수를 도시 규모별로 분류해 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교육훈련일수가 6.84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4.89일, 수도권은 3.06일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직원규모별로는 직원의 수가 적을수록 교육훈련 일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교육훈련사업 실시 NGO 현황

「한국민간단체총람2003」에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민간단체 290개소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의 NGO 355개를 대상(중복된 NGO 제외 총 500여개소)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연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NGO 실태 조사에 참여한 NGO는 사회일반분야가 46.8%인 36개로 가장 많고, 사회서비스분야가 28.6%인 22개, 노동·농어민분야가 13.0%인 10개, 교육·학술분야가 6.5%인 5개, 환경분야가 2.6%인 2개, 문화·언론 및 종교분야가 각각 1.3%인 1개 등 총 77개 단체였다. 이중 일반인 및 회원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농업교육(29.3%)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원봉사 교육(13.8%), 청소년 성교육(10.0%), 부모 자녀 교육(5.5%), 여성교육(5.3%), 심리상담 교육(2.8%)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여 운영하는 일반인 및 회원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태를 살펴보면, 농업 교육(36.8%), 자원봉사 교육(21.5%), 청소년 성교육(11.8%), 여성 교육(4.2%), 전문가 교육(3.5%), 리더십 교육(3.5%) 등이 많았다.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프로그램 대상과 관계없이 예산 부족이었다. 대부분의 단체가 프로그램 실시 이후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이 전체 조사 단체의 60% 이상에 따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일반인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단체가 73%를 넘고 있어, 앞으로 NGO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더욱 늘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4. NGO의 교육훈련사업 강화를 위한 과제

그동안 우리 나라의 NGO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힘입어 쟁점 발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외국의 NGO들과 같이 시민사회의 주요한 문제인 실업예방이나 경제활동의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분야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NGO들의 교육훈련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기본 구성 요소인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의 확보와 함께, 관련 기관간의 연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먼웨어로서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와 학

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려는 학습자의 확보가 중요하며, 소프트웨어로서는 다른 교육시설과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되며, 하드웨어로서는 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과 시설, 설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교육훈련시설과의 긴밀한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NGO의 교육훈련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전문화된 교육전문가의 확보와 함께 틈새 교육 대상자 발굴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교육참여 잠재 집단을 발굴하고,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주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계획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문 교육자의 확보와 함께, 개발된 프로그램의 전문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경험시킬 수 있는 교·강사의 확보가 관건이다.

또한 NGO가 운영할 교육훈련사업은 관련 있는 시설이나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가 구축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정적 또는 시설 여건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NGO 시설이나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과 연계를 통하여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본래의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NGO가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지원해 줄 만한 법률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NGO를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국가에 의한 지원을 받더라도 NGO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NGO의 교육이 국가에 의해 좌우되거나 일방적으로 이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NGO의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과 더불어 전달 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NGO의 기능 확대와 더불어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인 「평생교육법」은 8가지 평생교육시설 중의 하나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정하고, 국가의 학습관리체제 안에 시민사회단체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통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업 단위(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민간비영리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는 자활사업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민간부문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의 일부도 NGO에 지원되고 있어서 NGO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정비 및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NGO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미미하며,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NGO에 대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은 매우 논란의

## 2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와 과제

여지가 많다. 그러나 NGO 중에서도 시민에 대해 복지, 의료, 상담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들은 정부와 기업 등의 외부지원에 의존할 수도 있으며, 정부와 기업을 견제하며 시민권익옹호(advocacy)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NGO들은 정부와 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한 조사(김민호, 2001a)는 시민사회단체 교육훈련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자기개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원봉사자들 및 회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저임금 및 미미한 직무능력개발 실태는 향후 NGO의 교육훈련사업 강화 가능성의 어려운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담당자인 일선 간사들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의 경험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에 대한 법률상 지원 방향과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NGO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실태 및 NGO 종사자(활동가)의 직무능력개발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NGO를 총체적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학습망의 하나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며 상호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중심의 네트워크형 학습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NGO의 교육훈련사업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NGO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NGO의 원활한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NGO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NGO 교육훈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NGO 종사자의 직무능력개발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할 것이다. 둘째, 총체적 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NGO의 원활한 교육훈련사업 및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NGO는 경제단체인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을 제외한 일반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다.

## 제2절 연구 방법

### 1. 관련문헌 및 자료 분석

NGO에 대한 관련 문헌연구 및 「한국민간단체총람 2003」 등의 자료분석을 통해 NGO의 교육훈련사업의 현황과 교육훈련사업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 2. 관련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

NGO 종사자(활동가), NGO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NGO의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자문 및 협의를 통해 NGO의 원활한 교육훈련사업을 위한 정책적인 과제를 분석 도출하였으며, NGO 종사자를 이 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였다.

### 3.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조사

#### 가. 심층면담조사 및 사례조사

분야별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 및 NGO 종사자의 직무능력개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NGO 및 NGO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조사를 통하여 설문조사지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면담조사의 결과를 교육훈련사업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 나. 설문조사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 및 NGO 종사자의 직무능력개발 실태를 파악하



#### 4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와 과제

기 위하여 「한국민간단체총람2003」에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NGO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NGO를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연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분야별(시민사회, 자치빈민, 사회서비스, 환경, 교육/학술, 노동/농어민, 경제/국제, 사회복지단체) NGO의 경영실태, 교육훈련실태 및 NGO 종사자의 직무능력개발실태 등이었다.

### 제3절 선행연구 분석

그간 NGO 전체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탐색적인 차원에서 시민교육 위주의 사회교육에 관한 연구로 제한되어 왔다. 시민교육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의식을 포함하는 ‘민주적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다. NGO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주도하는 차원에서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NGO의 직업교육훈련의 실태와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태이다. 현재 NGO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여성 관련 NGO들의 ‘여성인력개발센터(전 일하는 여성의 집)’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는 사회교육 관련 연구와 여성 관련 NGO 및 자활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 1. 사회교육 관련

이해주(2002)는 시민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민교육이 평생교육적 관점과 교육방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시민교육이 명망가에 의존하고 있어서 일반시민들의 학습동기나 학습경험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 넷째, 재

정적인 문제가 많아 교육시설을 갖춘 시민단체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김민호(2001a)의 68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조사를 보면 40개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7개 단체의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직업 관련 프로그램이었다. 이 조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이 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와 평생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하려는 학습자의 확보,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과 시설 및 설비의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민호(2001b)는 시민사회단체의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의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의 조항들이 비교적 규모가 큰 단체에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세한 시민사회단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2. 여성 NGO 관련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여성 관련 NGO들의 직업교육훈련 실태에 관한 연구(나영선 외, 1998; 채창균·고혜원, 2001; 나영선·고혜원, 2002; 고혜원, 2003; 나영선·고혜원, 2003; 고혜원, 2004)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는 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NGO 전반의 직업교육훈련 실태에 관한 연구는 아니었다.

## 3. 자활사업 관련

오영훈 외(2002), 이해경(2002)에 의하면 우리 나라 자활사업에서 NGO의 활동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및 관련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시달하며,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노동부는 종합취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자활사업 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조

6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와 과제

정 및 확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직접적인 자활사업의 시행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와 복지부의 자활후견기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개인 또는 그 연합체로서, 지역사회복지 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사업체계 내에서 NGO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자활후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저소득 계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제반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표 I-1> 자활사업의 종류 및 실시기관

주관/유형	구체적인 사업지정	의뢰기관	자활사업 실시기관
보건복지부 (비취업대상자)	자활공동체	읍면동사무소	자활후견기관
	업그레이트형 자활근로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시민단체 등 민간위탁기관
	취로형 자활근로		읍·면·동사무소 등
	지역봉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시·군·구 등
	생업자금융자(창업지원)		읍·면·동사무소, 자활후견기관 등
	재활프로그램		의과대학 정신과 클리닉, 대학심리연구소,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등
노동부 (취업대상자)	취업알선	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 시·군·구
	직업훈련(창업훈련)		직업훈련기관, 고용촉진훈련기관
	자활지원인턴		고용안정센터, 일반기업(인턴채용기업)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등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자료: 보건복지부(2001), 『2001 보건복지백서』.  
이혜경(2002), 『자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들 자활훈련기관들의 교육훈련 실적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전체적으로 48.6%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후건기관(60.0%)의 실시율이 복지관(37.0%)보다 높았다(오영훈 외, 2002). 후건기관의 경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과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1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교육훈련 실시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자활사업기관의 교육훈련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시사점(오영훈 외, 2002)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전담 직원에 대한 자활 관련 교육훈련 실태는 전반적으로 자활사업 전담 직원 중 사회복지 비전공자와 사회복지관의 자활사업 담당자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이들이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자활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기관의 고용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51.4%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교육훈련은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71.7%), 교육훈련의 성과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훈련대상자의 소극적인 태도(53.3%)와 교육훈련 대상자의 수학능력의 문제(26.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자활사업 대상자의 낮은 학력과 높은 연령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대상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활대상자의 고용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자활후건기관과 복지관이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자활대상자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움은 교육훈련 제공, 일자리 창출 및 알선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훈련 기관과 기업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자활사업이 지역사회 내의 교육훈련기관과 기업체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 8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와 과제

하는 것이다.

### 4. 선행연구의 시사점

NGO 전반의 교육훈련사업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으며,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 의하면 NGO의 교육훈련시설 및 재정의 열악함, NGO 종사자(활동가)의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제2장 NGO의 일반적 현황

### 제1절 NGO의 개념 및 유형

#### 1. NGO의 개념

NGO는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영역과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영역과는 달리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서 제3영역인 시민사회부문의 중요한 단위이다. NGO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기구로부터이다. 국제조약으로 만들어진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 Organization)」에 대비하여 민간인 및 민간단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직을 「비정부기구(NGO)」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 봉사영역 중심의 구제활동으로 출발한 NGO는 그 후 각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배경, 정치 문화적 환경, 그리고 정치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NGO 개념 정의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나타내고 있다(Farrington, 1993).

일반적으로 NGO는 비영리의 특정 공익을 추구하는 사적인 민간조직체로 규정된다. 즉, NGO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 조직으로서 정부 이외의 기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NGO는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며, 인권, 환경, 보건,

성차별 등의 특정 이슈를 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자발적 결사체인 NGO는 비당파적(non-partisan) 특성을 지니고 있다. NGO는 특정 정치집단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당파적 특성을 가지며, 동시에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NGO의 개념이 시민사회의 등장과 관련되어 국제적 성격에서 국내적 성격으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이는 NGO들이 비정치적·비당파적·자율적·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나, 인권문제, 소득불균형,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같은 쟁점들이 정치체제가 지닌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NGO들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국내정치·경제·사회문제의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화 추진세력과 연대하거나 또는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NGO가 의미하는 바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NGO를 나타내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활동적 측면에서 NGO의 특성을 종합하면 NGO는 정부나 시장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NGO가 추구하는 목적이 공익추구에 있는지 이윤추구에 있는지, 조직의 목표 그리고 조직의 운영상 민간부문의 자발성 여부, 정치성의 유무에 따라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NGO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발성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주도로 하여 만든 조직인 관변단체들은 주로 통제나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직의 규모가 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치적 혹은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이들은 행정조직의 종속적인 하위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GO는 이러한 관변단체들과는 달리 조직의 활동이나 경영에 인적·물적 자원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 즉, 강제성 없이 스스로 원하는 시민들로부터 시간, 재원, 자문 등의 기부행위와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NGO는 독립성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령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은 민간주도로 설립되고 그 운영에 있어 정부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에 존재하면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는 중간 매개체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셋째, NGO들의 또 다른 특성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성 조직이라는 점이다. 즉,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생긴 이득을 당해 조직의 소유자, 대표자 또는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다시 비영리 활동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비영리부문이라고 하여 이익을 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II-1> NGO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구분	NGO의 특성
Hatch(1980)	① 공식성, ②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③ 이익 비배분
Breton(1985)	① 공식성, ②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③ 이익 비배분, ④ 자치성, ⑤ 공익성
Hasman(1987)	① 공식성, ② 독립성, ③ 비영리성, ④ 자발성
UN(1997)	① 비정부·비국가성, ② 자발성, ③ 공식성
공보처(1997)	① 비정당성, ② 비영리성, ③ 자발성, ④ 자율성
김태영(1998)	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② 이윤배분금지의 원칙, ③ 자발성
김준기(1998)	① 법인성, ② 자발성, ③ 비국가성, ④ 비영리성
김영래(1998)	① 독립성, ② 자율성, ③ 비정치성, ④ 비당파성
신광영(1999)	① 사회운동차원의 활동, ② 자발성, ③ 비영리성, ④ 민간결사체의 성격
임승빈(1999)	① 공식성, ② 비영리성, ③ 자발성, ④ 비정치성, ⑤ 특정종교의 전파활동이 아니며, ⑥ 친목이 아닌 사회공익 기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자료: 서춘식(2002). 『한국 NGO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넷째, NGO는 비정치적·비당파적 성격을 지닌 조직체이다. NGO는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당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정치적·비당파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NGO는 특정이데올로기의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당과는 구별된다.

다섯째, NGO는 공식성을 특징으로 한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NGO는 공식적인 구성원,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규정과 조직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NGO는 임시기구가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는 개별성원들이 비영리 특정목적을 공유하면서 그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내부구조와 규칙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NGO의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NGO의 유형분류

### 가. 대외적 역할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NGO의 유형, 역할, 기능, 활동방식 등의 주제 하에 다양한 분류들이 있다. 특히, NGO의 '역할'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면, NGO의 역할은 그 역할의 대외성·대내성을 기준으로 정부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느냐, 시민사회 자신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대외적 역할과 대내적 역할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사회의 대응축인 정부와 시장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는 주체로서 역할과 시민사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역할 범주별로 NGO의 역할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김병완, 민현정).

NGO의 첫 번째 역할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쟁점발굴자로서의 기능이다.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문제를 이슈화시켜 사회의 표면에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수많은 사회문제 중 공익을 대변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표출시키는 것이다.

둘째,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청산과 정화를 위해 최근 주목받는 NGO의 역할 중 하나가 혁신자로서의 역할이다. 정치개혁, 행정개혁, 시장개혁의 선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함으로써 혁신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시민운동은 국가권력 및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하여 공공

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들에 대한 동원과 참여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를 강화시킨다(박상필, 2001, 165).

넷째, 오늘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다 전문화되어 NGO가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섯째, 중개·조정자로 NGO는 일반적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의사소통의 원활한 수행과 의견의 조정, 정보의 교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담론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 나. 대내적 역할

첫째, NGO는 스스로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여 그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요구의 충족문제를 정부나 기업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적응적·선도적 입장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사회구성원들이 소수이거나 약자일 경우 그 문제가 이슈화되기에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표출되지 못하는 경우, 이들의 힘을 응집하고 이들을 대변하여 체계적으로 절차적인 문제해결의 주체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NGO는 이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운데 쟁점의 배경이나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명확히 하면서 그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고 쟁점의 공유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그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제공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셋째, NGO도 때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여기에서의 이익은 조직의 목표로서 그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좁게는 회원의 이익을 반영하고, 넓게는 조직활동의 주요대상이 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표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사회조직과 구성원들이 그들의 권리와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계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과 일반홍보, 언론의 활용을 통해 문제성을

인식시키고, 침해받는 권리를 보상받게 하는 의식계몽운동, 실천계몽운동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덴커와 위스(Leon Gordenker and Thomas G. Weiss)는 NGO의 기능을 참여·활동적, 교육·상담적, 선진·대변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능 분류를 NGO의 산출물의 차원들과 같이 재구성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2> NGO 기능에 따른 활동내역

NGO의 기능	대상	활동내역
참여·활동적 기능	- 수혜 대상자	- 복지·자족 능력 배양 - 개발·구조 봉사 - 기술 자문
교육·상담적 기능	- 기부자·계약자 - 기부기관 - 시민	- 교육·상담 - 공적 여론 조성
선진·대변적 기능	- 기부자·계약자 - 기부 대리기관 - 정부기관	- 목표설정 - 프로그램 설계 및 집행 - 프로그램 감독

#### 다. 과제별 NGO 유형

NGO들은 사회의 거의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동 분야별로 분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역별로 하나의 과제를 갖고 활동하는 NGO들도 있고, 여러 영역에 걸쳐 활동하는 NGO들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있고 NGO들의 활동도 한 영역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단일과제 NGO들이 주류를 이루는 경향이 농후하며 반면에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사회에서는 기득권층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발달하여 NGO들의 활동이 매우 위축될 가능성이 많고, NGO들이 활동을 한다해도 선진국들과 달리 여러 영역의 과제들을 망라해서 다루는 종합 NGO들이 발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김동춘 외).

## 1) 단일과제 NGO

특정 영역에서 단일과제를 다루는 NGO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환경NGO는 환경부분만을, 여성 NGO는 여성 분야, 평화는 평화문제만을 다루는 NGO들을 의미한다. 이들을 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정치·경제·문화·환경·여성·인권·주민자치·평화·소비자·법·교육·청소년·언론·빈민·주거·교통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또한 수많은 NGO들은 활동영역을 전문화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환경부분의 경우, 철새, 습지, 에너지, 쓰레기, 댐, 공기, 생태계, 종 다양성, 물, 토양, 삼림, 기후변화, 유전자, 그리고 환경소송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NGO도 있고, 이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환경 NGO도 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해 활동보다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NGO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매년 지구환경보고를 발간하는 미국의 'Worldwatch Institute'나 독일의 'Oeko-Institut'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동성애문제나 난민문제, 외채와 빈곤, 예산과 국정감사, 그리고 부정부패 등을 포함하여 NGO들은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여 활동하고 있다.

## 2) 종합 NGO

사회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 NGO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NGO가 정치·경제·문화·교육·환경 등의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가장 전형적인 예가 YMCA 등이다. 이런 종합 NGO들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도 그리 흔한 NGO의 유형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YMCA, YWCA를 비롯하여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홍사단' 등이 종합 NGO들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경실련'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통일·주민자치·언론 등을 포괄한 활동을 하고 많은 회원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YMCA의 경우도 정치·사회·교육·환경·언론과 대중매체·주민자치·소비

자·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고, 특히 사회교육과 평생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 NGO들은 백화점식 사업으로 인한 특정분야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 보면 시민운동조직이 종합 NGO로 발전할 수밖에 없던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이러한 백화점식 운동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고조되어 이러한 비판에 많은 현장 활동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는 급속도로 분화되어 가고, 이에 따른 전문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운동이 이런 환경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민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운동의 전문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한 NGO들만이 보다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발전할 것이다.

## 제2절 우리 나라 NGO의 현황

### 1. NGO의 설립현황

우리 나라의 초기 NGO설립은 일제강점기인 1905년 대한적십자사, 1913년 흥사단, 1914년 YMCA 등 10여개 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였으며, 본격적인 설립은 1980년대 이후에 77.5%로 집중 설립되었다(김혁래, 1977: 60). 1970-8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처럼 정부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관에 의지하여 운영되는 단체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1987년까지 순수한 NGO들은 관변단체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반정부의 단체들로 양극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6. 29선언이후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단체들이 설립되면서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현재 국내의 NGO 현황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미등록단체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활동중인 시민단체의 54%가 미등록단체라고 한다. 따라서 등록된 단체와 미등록된 단체를 모두 포함하면 비영리단체의 규모는 6만개 정도에 이른다는 주장(Kim & Hwang, 2000)도 있으나 이는 이익단체나 기업의 재단 등과 같은 민간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이다.

<표 II-3> 민간단체의 지역분포도

지역	서 울	경 기	인 천	부 산	대 구	대 전	광 주	울 산	강 원	충 북	충 남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전 주	제 주	합계
개	564	787	249	314	197	181	174	153	170	189	181	297	292	218	294	163		4,423

자료: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04. 3. 31현재).

2003년 1월 기준 우리 나라 NGO수는 대체로 2만5천여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2003년 시민의 신문에서 발간된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의하면 NGO 숫자는 1996년 29,041개 단체(학회 해외단체포함 6,519 지부포함 20,000)로 조사되어 지부를 포함한 NGO는 최근 수년 동안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2004년 3월 기준 행정자치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4,941개 단체(중앙 522, 지방 4,423)로 파악되고 있다. 이의 대부분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특히 자치, 환경, 시민사회의 분야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의 신문, 1999: 10. 18).

<표 II-4> 우리 나라 NGO의 영역별 분류 현황

활동영역	단체수	%	활동영역	단체수	%
시민사회	1,013	25.2	종교	107	2.7
지방자치	222	5.5	노동/농어민	217	5.4
사회서비스	743	18.5	경제	51	12.5
환경	287	7.1	국제	44	1.1
문화	634	15.8	기타	20	0.5
교육/학술	235	5.8	합계	4,023	100

자료: 시민운동정보센터(1999).

## 2. NGO의 활동영역

우리 나라에서 NGO활동은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을 전환점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YMCA, YWCA, 흥사단 등 오랜 역사를 지닌 몇몇 합법단체가 있었을 뿐 주로 재야단체들이 우리사회의 개혁을 위한 민주화 운동 등 체제변혁에 초점을 맞춘 저항 내지 투쟁의 성격을 지닌 민중활동이 1987년을 전환점으로 쇠퇴하면서 합법적, 평화적, 점진적, 비폭력 시민운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1987년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출발을 시작으로

<표 II-5> 활동영역별로 본 대표적 NGO

사회운동영역	NGO의 명칭
지방자치	경실련, YMCA, 참여연대,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흥사단
환경운동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YMCA, YWCA, 교회환경연구소, 한살림 공동체
교육개혁	경실련,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학부모연대, YMCA, 흥사단, 참여연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협의회
국제적 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YMCA, 환경운동연합
통일개혁	경실련, 흥사단, 우리민족 하나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제개혁	경실련, 참여연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여성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소비자운동	한국소비자연맹, YMCA
우리농업 살리기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YMCA, 경실련
교통문제	녹색교통연합, 도시교통연구소,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노사관계	경실련, 참여연대, 노동인권회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보건의료	기독교청년회사회, 청년한의사회,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언론개혁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외국인 노동자문제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문화운동	YMCA, 흥사단
장애인 복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청소년	YMCA, YWCA, 흥사단, 겨레사랑운동 실천연합
의식개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사회 공동선 운동연합, 흥사단
자원봉사	YMCA, YWCA, 대한적십자사
부정부패 추방운동	경실련, 참여연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자료: 경기개발연구원(1999). 『경기도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로 1990년대에는 환경운동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NGO 단체들이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활동영역도 광범위해졌으며 국가나 경제체제 및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그 역사의 짧음과 허약한 시민사회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왔다.

최근 들어, 반공해, 녹색생명운동 등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경운동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운동분야도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NGO들이 과거처럼 정부 주변적인 성격에 머물거나 생활계몽, 자활, 복지, 종교 등의 활동주체에 국한되어 있던 것에 비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지방자치, 교육, 통일, 소비자운동,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현실 참여를 이루어내는 NGO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NGO의 조직형태

NGO의 주요 조직형태는 이념적으로 단독조직, 연합체, 협의기구로 나눌 수 있다(임승빈, 1999: 47-48). 단독조직은 조직내부에 별도의 지부나 하위조직을 갖지 않는 조직을 말한다. 연합체는 동일한 조직 내에 지역별 또는 활동영역별로 특화된 하위조직은 예산 및 활동범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앙조직이라 할 수 있는 연합체에 종속되거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다.

협의기구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개별조직들의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단독조직을 회원으로 하여 새롭게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협의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들은 협의기구의 하위단체가 아니며 각자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우리 나라 NGO의 경우는 주로 단독조직이나 연합체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 II-6> NGO 조직형태

조직 형태	단 체 명
단독 조직	부정부패추방 범국민연합회, 참여민주사랑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회빈민의료협의회, 한 살림모임중앙부인회, 나라사랑청년회, 한마음 운동본부, 민족의 명예를 생각하는 모임,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민자치 연구모임, 한강 살리기 시민운동연합, 녹색평화시민운동연합, 환경을 지키는 시립의 모임,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모임, 영근회, 낙동강 보존회, 신천 레저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인천시민의 광장, 생명을 지키는 안산시민의 모임,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 군산·옥구환경운동 시민연합,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 온산공해대책협의회, 한국야생화연구소, 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 등
연합체	경제정의실천연합, YMCA, YWCA, 흥사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우리말 살리기 운동본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카톨릭여성단체연합, 불교사회연구원, 기독교 학생총연맹,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정신개혁운동시민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서울환경연합운동, 자연의 친구들, 환경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삶을 위한 시민의 모임, 배달환경연구소 등
협의기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연합회, 전국농민 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사회단체협의회, 겨레사랑 시민운동협의회, 환경사회단체, 겨레사랑 시민운동협의회,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쓰레기문제해결시민운동협의회, 5.18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맑은 물 되찾기 운동연합회 등

#### 4. NGO의 교육 활동

최근 들어 NGO에서는 시민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면, 참여연대의 부설 조직인 ‘참여사회아카데미’에서는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의식의 고양과 참여민주주의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21세기 시민리더십’강좌를 비롯하여 ‘사회운동 워크숍’, ‘사회복지강좌’, ‘인권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서울 YMCA에서는 ‘여성시민운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흥사단은 부설기관인 도산아카데미연구원과 청소년연구원, 민족통일본부,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전국 1만여 회원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일에 관한 토론회와 통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인터넷을 통

한 시민학교를 운영하여 올바른 시민 양성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문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좋은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는 1995년부터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언론개혁시민연합’ 부설 언론아카데미에서는 직업교육훈련으로서 기자와 비디오 저널리스트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지방에 있는 NGO에서도 다양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거제도에 있는 ‘초록빛깔 사람들’은 ‘초록빛깔 배우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과 의식을 깊이 심어주고 있으며, ‘아름다운 광주사랑 시민모임’은 역사기행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아파트촌에 자리 잡고 있는 ‘고양시민회’에서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를 개설하였으며,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사업을 강조하는 충북 괴산의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는 농림부장관을 비롯하여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견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11개의 시민사회단체<sup>1)</sup>가 주축이 되어 ‘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 제3절 NGO에 대한 지원형태

#### 1. NGO의 정부지원 배경

시민단체의 재정자립을 둘러싸고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정부의

1) 11개 시민단체는 경실련,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여연대, 학부모연대, 여성단체연합, 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MCA, 환경운동연합, 홍사단이다.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부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부와 NGO의 관계는 대립적이고 갈등관계만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없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재원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한다는 믿음을 『비영리민간단체의 신화(the myth of voluntarism)』(Salamon, 1995; 이근주, 2000)라고 한다. 이근주(2000)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들어 설명한다. 첫째, NGO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 때문인데, NGO는 정부가 적절하게 부응하기 어려운 특정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NGO의 자원확보의 제약 때문인데, NGO는 정부나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정부에 부여된 강제력을 바탕으로 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며, 기업은 이윤추구활동을 통하여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확보한다. 하지만 NGO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발적인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회비, 후원금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확보하게 되는데,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NGO가 회비나 후원금만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와 NGO의 관계가 항상 대립적이고 갈등관계로만 존재하지는 않으며, 보완 혹은 보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NGO의 지원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평가해서는 안되며,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정부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은 한국적 현실에서 다분히 이상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재정자립을 하고 있는 단체는 미국의 NGO들과 그린피스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능력이 증진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폐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외적 환경과 내적 역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박상필, 2001)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자칫 정부의 지원과 그에 의한 NGO의 독립성 상실이란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 박상필은 『NGO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은 정부에 의한 NGO의 수직적 포섭과 NGO의 정부에 대한 구조적 의존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기능은 공익과 대치되거나 소외자·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익실현이라는 사명을 갖는 NGO는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NGO의 자발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NGO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재정 일반에 대한 지원과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접지원에는 세금감면(비영리단체에 대한 세금면제, 기부금 세제혜택),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할인, 무료 공익 광고, 상근자 교육 지원, 사무실 대여 등이 있다.

현재 현행 우리 나라의 관련법들은 NGO활동을 강화하기도 하고 규제하기도 한다. 시민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시민단체의 재정문제와 관련이 있는 법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현재 시민단체의 재정안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개정압력을 받고 있다. 이 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내세워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모금행위를 문제삼아 고발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모금경비제한으로 사실상 모금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기부금모집은 주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 특히 기부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한국에서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시민운동의 재정문제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입법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

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고 자칫 명목 뿐인 지원이 될 소지도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현재 이 법의 쟁점이 되는 조항은 제10조와 제11조이다. 시민단체들은 제10조(조세감면)에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시행을 위한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시행령으로 현재 일반 우편요금의 25%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만큼 원래 요금의 반정도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지원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또다른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즉 직접지원에 대한 것이다. 현재 이 법은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점 때문에 NGO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시민단체의 특정 사업에 보조금을 주기보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접지원의 형태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개정방향으로는 독립민간 재단 설립을 통한 재정지원의 민간화가 주장된다. 독립적인 시민단체지원재단을 만들어 여기에 총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NGO의 재정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민간재단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박상필, 2001).

한편, 우리 나라에서도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정부의 기능 중 공익적 기능 일부를 시민단체에게 맡기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행정자치부가 그 동안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던 150억 원의 예산을 모든 민간단체가 경쟁을 통해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전체의 지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대부분은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관계가 건전한 비판 혹은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민간단체가 정부에 종속되어 민간단체의 활동이 왜곡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2. 중앙정부의 지원

정부의 각 부처는 민간단체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나 목적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정책은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부처에 따라 자의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그 결과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민간단체지원은 1999년 공개경쟁 하에서 사업공모방식으로 추진된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도 행정자치부에 할당된 예산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표에는 1998년 민간단체의 예산을 지원한 10개 부처와 서울시의 지원상황이 나타나 있다. 총 지원금액이 1,268억 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전 부처의 민간단체 지원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7> 1998년도 정부 각 부처 민간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지원단체(사업)	지원 예산	법적근거	지원원칙	사업집행 감독	선정 및 평가방법
행정자치부	국민운동단체지원(2개 단체)	3,400	개별법	사업비지원		언급없음
	지방국민운동지원	7,500	보조금법	공모방식		민간선정위원회
환경부	6개 단체	1,427	보조금법	보조금법	보조금법	언급없음
재정경제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8	여성발전기본법	민간주도의 사업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	정례적인 업무협조와 예산결산	언급없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1,269	소비자 보호법			
	한국태평양경제 협력위원회	194	보조금법	공공적 성격 (일부보조)	민법37조의 관리감독	언급없음
공보실	민주공동체의식실천사업(48개 단체)	986	근거없음	공모방식	현장실사 및 정산	민간선정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발전기금(12개 단체)	8,100	여성발전기본법	공모방식		민간선정위원회
통일부	5개 단체	955	보조금법, 통일부 보조금운영규정	민간단체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	보조금법	언급없음
서울시	여성발전기금(69개 단체)	600	지방자치법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조례	공모방식	민간자원봉사자 활용 모니터링 및 정산	서울시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민관협동)
	시정참여공모사업 일반(41개 단체)	1,040 (380)	관련조례	공모방식	진행사항 서면보고, 사업중간보고회	민간위원회
	교통(21개 단체)	(300)				
환경(50개 단체)	(360)					
보건복지부	62개 단체	21,157	관련법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문화관광부	95개 단체	79,042	관련법	사업성격에 따라 다양(3개사업공모)	사업진행 과정 및 정산보고	민간선정위원회(3개 사업)
건설교통부	건설공사기준정비(5개 학회)	24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공모방식	교부조건에 따른 실행과정감독	민간선정 위원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128	보조금법	교통사고예방사업	보조금법	언급없음
농림부	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	513	양곡관리법	언급없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지도·감독	언급없음
합계		126,813				

자료: 정윤수(1999),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분석』.

이상으로 이루어진 지원방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정운수, 1999). 첫째, 지원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관련 개별법이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실의 경우 ‘민족공동체의식 실천사업’을 법적인 근거가 없이 48개 민간단체에 9억 8천 6백만 원을 지급했다.

둘째, 지원원칙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민간주도의 사업수행이 효율적일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사업수행 주체를 모집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공보실의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 행정자치부의 지방국민운동지원사업,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사업 등이 공모방식으로 지원되었다.

셋째, 사업집행 및 감독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과정 및 정산보고를 통해 사업집행을 감독하였다. 다른 형태의 감독으로는 공보실의 현장실사, 서울시의 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모니터링과 사업중간보고회 등을 들 수 있다. 농림부의 경우에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었다. 대체로 볼 때 엄격한 의미의 사업집행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감독을 너무 엄격히 할 경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으나, 지원되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감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선정 및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공개모집인 경우에 민간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 물론 사업의 성격상 관련 부처와의 협조 하에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부처의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공개경쟁을 통해 보다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업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업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부처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선정이 아무리 공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선정되었을 때 제시된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거두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각 부처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관련 협회, 연구원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함께 인건비도 지원하나, 순수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었다. 문화관광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같이 관련 협회, 연구원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함께 인건비도 지원하나, 순수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지원하였다. 문화관광부가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는 만화·영상물 제작지원(11억 5백 만원), 우수국산게임선정·지원(6천 만원), 국내 게임교육기관의 심사·선정 후 위탁교육 실시(8천 만원)의 3개 사업이었다. 여러 부처로부터 다양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도 특정사업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물론 부처별로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이 달라 여러 부처에서 지원 받을 수도 있으나 비슷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한편 부처로부터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지원의 원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일부 협회회의 경우 관련 부처가 일정예산을 배정해 주면 협회회는 기본적으로 관련 단체가 많이 가입하여 회원단체들 간의 상호학습과 정보교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부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일부 협회회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은 회원단체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원단체 수를 제한하는 유인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회원단체 수가 늘어날 경우 각 단체별로 배당되는 지원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9년도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정보공개자료에서도 1998년도 민간단체 지원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그 동안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에 지원되었던 국민운동단체지원금을 사업별로 경쟁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사업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업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민간단체보조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표 II-8> 행정자치부 1999년 민간단체 보조사업 유형별 분류

(단위: 천원)

유형(사업수)	총사업비	지원액	비고
국민통합/의식개혁 (총 57개, 2,980,000(39.7%))	민족회합(5)	5,445,168	140,000
	민주의식제고(10)	2,874,930	760,000
	부정부패 척결(8)	635,093	440,000
	인간성회복 및 계층 갈등 타파(12)	1,883,169	610,000
	정보화 마인드(4)	171,820	160,000
	지역감정 타파(17)	1,383,426	860,000
	기타(1)	20,150	10,000
	민간부문 활성화 (총 27개, 2,430,000(32.4%))	민간단체정보제공(2)	587,950
자원봉사자 육성(9)		959,130	460,000
주민공동체 육성(12)		2,749,160	1,640,000
해외단체 협력(4)		4,436,480	180,000
경제살리기 (총 8개, 230,000(2.3%))	신지식인 육성(4)	190,538	150,000
	실업자 지원(3)	90,000	50,000
	기타(1)	47,100	30,000
사회복지 (총 5개, 170,000(2.3%))	노인(2)	49,194	50,000
	아동/청소년(3)	132,894	120,000
환경 (총 15개, 850,000(11.3%))	자원절약(4)	887,030	460,000
	환경보호(9)	580,429	360,000
	기타(2)	57,621	30,000
정치(언론)개혁(8개, 2.9%)	350,805	220,000	
문화활동(6개, 2.5%)	316,355	190,000	
교통안전(7개, 3.9%)	1,210,952	290,000	
기타(7개, 1.9%)	529,472	140,000	
계(총 140)	25,588,866	7,500,000	

자료: 행정자치부.

## 3. 지방정부의 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NGO가 받은 재정지원액은 연평균 4,348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가 34.0%로 가장 높았지만 1억원이 넘게 받은 단체도 12.8%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 및 자치구의 부서에서 NGO로 지원한 금액은 NGO당 평균 1,228만원이었다. NGO와 서울시 담당부서의 재정지원액이 2.8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단체가 여러 부서에 걸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lt;표 II-9&gt; 연평균 재정지원액

구분		사례수	비율	평균
NGO	1천만원 이하	16	34.0%	43.48백만원
	2천5백만원 이하	10	21.3%	
	1억원 이하	15	31.9%	
	1억원 초과	6	12.8%	
담당공무원	5백만원 이하	11	42.3%	12.28백만원
	1천만원 이하	5	19.2%	
	2천5백만원 이하	7	26.9%	
	2천5백만원 초과	3	11.6%	

자료: 서울시.

NGO는 지원 받은 금액을 교육·홍보·캠페인 28.4%, 실업대책 등 정책사업의 집행 20.4%, 조사·연구·출판 13.6% 순으로 사용했다. 이에 비해 담당공무원은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분야를 교육·홍보·캠페인 26.7%, 자원봉사활동 22.8%, 실업대책 등 정책사업의 집행 14.9%,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 10.9% 순이라고 응답했다.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NGO는 긍정적 57.5%, 매우 긍정적 23.4%, 보통 17.0% 순으로 나타났고, 담당공무원은 52.6%, 보통 31.6% 순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가 보통/부정적인 이유로, NGO 관계자는 까다로운 지침과

행정의 NGO에 대한 이해부족, 담당공무원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비해 담당공무원은 NGO의 전문성 부족, 45.5%, NGO의 자체사업비 부족 18.2%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부족 13.7% 순으로 응답하였다.

## 제3장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

### 제1절 NGO의 교육훈련사업 개요

「한국민간단체총람2003」에 수록된 NGO중 목적사업이 인력개발·교육훈련(인력양성, 연수 등)인 NGO를 추출하였다.<sup>2)</sup> 「한국민간단체총람」은 이른바 순수한 NGO 및 자발적 사회단체의 성격을 갖는 직능단체 등 순수 민간단체도 대거 포괄하여 모두 10,000개의 단체를 수록하고 있다. 총 10,000여 개의 NGO 중 290개의 NGO가 교육훈련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중 활동영역이 시민사회 부문인 경우가 40%인 116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사회서비스로서 24.5%인 71개소이고, 사회복지단체, 노동·농어민, 교육·학술 등의 순이다.

---

2) 『한국민간단체총람2003』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종교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비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및 조직을 조사했으며, 조사방법은 단체 상황에 따라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조사 방법 중 한 가지를 채택하거나, 또는 이들을 혼용하여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정부 각 부처의 법인 및 사회단체 현황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사회단체 현황, 각 지역별 연감, 백서에 수록된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컴퓨터 통신 단체 정보 서비스, KT114(한국통신 전자 전화번호 서비스) 자료, 신문기사 자료(2002. 1-9월)을 참고로 선정하였고, 조사기간 및 기준 일은 2002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회수된 조사양식과 인터넷 검색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표 III-1> 교육훈련사업 실시 NGO의 구성

구분	단체수	비율(%)
시민사회	116	40.0
자치빈민	5	1.7
사회서비스	71	24.5
환경	2	0.7
교육/학술	9	3.1
노동/농어민	41	14.1
경제/국제	2	0.7
사회복지단체	44	15.2
합계	290	100.0

주: 시민사회 활동영역은 시민사회 일반, 여성, 청년·학생, 법·행정·정치, 인권추모사업회, 평화통일민족, 소비자생활이며, 사회서비스 활동영역은 사회복지, 건강·보건·의료, 자원봉사·구호임.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NGO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서 111개소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38개소, 13.1%, 전북이 17개소, 5.9%, 경남이 15개소, 5.2%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표 III-2> 교육훈련사업 실시 NGO의 지역별 구성

지역	단체수	비율(%)
서울	111	38.3
강원	10	3.4
경기	38	13.1
인천	12	4.1
충남	8	2.8
충북	13	4.5
대전	6	2.1
광주	10	3.4
전남	10	3.4
전북	17	5.9
경북	12	4.1
대구	9	3.1
부산	11	3.8
경남	15	5.2
울산	3	1.0
제주	5	1.7
합계	290	100.0

이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NGO는 48.3%인 140개였으며, 단체 활동가 교육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NGO는 각각 29.3%인 85개와 23.4%인 68개(중복 포함)였다.

<표 III-3> 교육훈련사업 실시 NGO의 교육훈련 대상별 구분

구분	단체수(%)	
일반인 대상 교육훈련	140(48.3)	
단체활동가교육	85(29.3)	프로그램중복단체: 3
자원봉사자교육	68(23.4)	

교육훈련사업 실시현황에서 NGO의 활동영역별 구분을 하여 보면 가장 많은 영역이 사회복지단체로서 31.4%인 44개이고, 노동/농어민이 22.9%인 32개, 시민사회가 20.7%인 29개, 사회서비스가 18.6%인 26개 순이었다.

<표 III-4> 교육훈련사업 실시 NGO의 활동영역별 구분

NGO 활동영역	단체수	비율(%)
시민사회	29	20.7
자치빈민	3	2.1
사회서비스	26	18.6
교육/학술	4	2.9
노동/농어민	32	22.9
경제/국제	2	1.4
사회복지단체	44	31.4
합계	140	100.0

다음으로 NGO 활동가 교육을 실시하는 NGO의 활동영역을 구분하여 보면 시민사회 부문 NGO가 89.4%인 76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사회서비스가 9.4%인 8개, 환경의 순이었다.

<표 III-5> NGO 활동가 교육 NGO의 활동영역별 구분

NGO활동가교육 부문별	단체수	비율(%)
시민사회	76	89.4
사회서비스	8	9.4
환경	1	1.2
합계	85(3개 단체 중복)	100.0

자원봉사자 교육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NGO가 54.4%인 7개로 가장 많고 시민사회가 20.6%인 14개, 노동·농어민이 13.2%인 9개의 순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표 III-6> 자원봉사자 교육 NGO의 활동영역별 구분

자원봉사자 교육 부문별	단체수	비율(%)
시민사회	14	20.6
자치/빈민	2	2.9
사회서비스	37	54.4
환경	1	1.5
교육/학술	5	7.4
노동/농어민	9	13.2
합계	68(3개 단체 중복)	100.0

## 제2절 NGO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

다음은 최근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의 NGO를 대상으로 조사된 NGO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에 관련된 사항<sup>3)</sup>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다음과

3) 이 연구(Yoon, Soonchul(2003). *Study o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NGO*, Korea. KDI Graduate School.)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358개 소속 단체 중 123개 NGO 단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단체 표본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123개의 NGO 단체 중 27(22.0%)개 단체가



같다.

### 1. 급여수준

NGO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897천원이며, 서울이 974천원, 대도시는 868천원, 중도시는 821천원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7> NGO 종사자 평균 임금(연령별, 성별, 지역별)

(단위: 천원)

연령	평균 임금	지역			성	
		서울	대도시	중도시	남성	여성
25세 이하	673	766	718	588	-	673
26-30세	778	835	716	716	789	774
31-35세	924	980	852	852	926	922
36-40세	1,010	1,172	1,030	825	1,082	875
41세 이상	1,047	1,033	1,069	1,040	1,152	886
합계	897	974	868	821	974	827

자료: Yoon, Soonchul(2003). *Study o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NGO, Korea*. KDI Graduate School.

다음은 특별수당(가족수당, 직책수당)에 관한 내용이다. 조사대상 NGO의 54.5%가 1개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상근자에 대한 연간 평균 수당은 539,000원이며, 1개 NGO가 평균 7.6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6대 광역도시에는 38(30.9%)개 단체, 나머지 58개의 단체가 중소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서울 28.1%, 광역도시 28.1%, 기타 도시 43.7%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의 차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중소도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그 차이가 줄어든다.

&lt;표 III-8&gt; NGO 종사자 평균 특별 수당의 수

(단위: 개)

구분	조사 NGO 수	수당의 수
전국	123	1.41
서울	27	1.9
대도시	38	1.6
중도시	58	1.2

자료: Yoon, Soonchul(2003). 전제논문.

상여금은 상근자에 대하여 연간 1,632,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NGO의 74%가 1개 이상의 법정 보험에 가입하여 있다. 의료보험은 54%, 고용보험은 73%, 산재보험은 69%, 국민연금은 54%의 NGO가 가입하여 있다. 퇴직금제도는 22.7%의 NGO가 실시하고 있다.

## 2. 채용 및 승진

공개채용은 NGO가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직원 채용 방식이다. 일반 기업과는 달리 NGO의 특성상 단체 종사자의 내부 추천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흥미로운 점은 소도시로 갈수록 내부 추천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에서는 아직 NGO에 대한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협업체 형식으로 최근에 설립된, 소규모 단체일수록 공개채용비율이 낮아진다. 또한 부장과 국장의 채용 방식은 보통 조직 내부의 소개로, 직원들은 주로 공개로 채용된다. 공개채용 방식은 68(42.9%)개 단체가 채택하고 있으나, 부장과 국장의 경우 각각 19.0%, 5%만이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

NGO의 직급은 보통 직원, 부장, 국장의 세 계층이다. 직원에서 부장으로 진급하는 기간은 약 2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원 규모별로 보면 상근자의 수가 커짐에 따라 승진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1987년 이전에 설립된 단체의 경우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12년 6개월 정도로 1987년 이후에 설립된 단체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

모가 큰 곳에 위치하고, 직원이 많고, 설립일이 오래 될수록 승진기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노동시간

NGO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6시간으로 남녀의 차이는 없으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근무시간은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주 5일 근무제는 1987년 이후에 설립된 NGO 단체들의 실시 비율이 높고, 서울지역 NGO의 70.3%, 수도권 57.8%, 중소 도시의 46.2%에 달하는 NGO 단체들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5일 근무제는 상근직원의 수가 30명 이하인 NGO에서는 56~60%정도이나, 상근직원의 수가 30명 이상인 NGO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 4. 직무교육훈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NGO 직원의 교육훈련 일수는 5,930일로, 한 사람 당 평균 4.94일의 교육훈련을 받았다. 이를 보통 기업의 직원들이 받는 교육훈련 일수와 비교하면 NGO 직원들은 기업의 1/5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교육일수를 도시규모별로 분류해 보면, 중소도시의 교육훈련일수가 6.84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은 4.89일, 수도권은 3.06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직원규모별로 교육훈련을 보면, 직원규모가 적을수록 교육훈련일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수가 6명 이하인 단체의 경우 7.6일, 15~20명인 단체는 9.3일을 교육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구조의 측면에서는 독립 단체가 9.32일을 교육훈련에 할애하여 가장 높고, 설립연도로는 1987년 이후에 설립된 NGO직원들이 5.78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4) 200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전체 교육훈련 평균 일수는 남성이 30.4일, 여성이 26.5일로 나타났다.

<표 III-9> 교육훈련 일수

(단위: 개, 일)

	조직			교육훈련	
	조직수	표본수	직원수	총 교육훈련일수	개인당 교육훈련 일 수
전국	123	80	1,200	5,930	4.94

자료: Yoon, Soonchul(2003). 전개논문.

교육훈련비는 총예산의 0.3%로 161,170,000원이며, 상근직원 1인당 134,000원이다. 이는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단체는 일인 당 148,000원, 수도권은 129,000원, 그 밖의 도시에서는 일인당 120,000원의 교육훈련비를 사용했다. 이처럼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비용은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규모측면에서는 직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훈련비용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1987년 이후에 설립된 단체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단체와 직원 수가 적은 단체일수록 보다 많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교육훈련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체 규모가 클수록 전체 교육훈련에는 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교육훈련 예산

(단위: 개, 천원)

	조직			교육훈련	
	조직 수	표본 수	직원 수	총 예산	개인당 예산
전국	123	80	1,200	161,170	134

자료: Yoon, Soonchul(2003). 전개논문.

## 5. 교육훈련과 이·전직

임금은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직률은 임금이 월 60만원 이하인 NGO 활동가의 이직률이 114.9%로 가장 높고, 반면 임금이 140만원 이상은 이직률이 1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훈련과 이직률에 관한 내용을 다음의 표로 나타내었다. 직업훈련을 실시한 NGO는 65%인 80개이고, 이직률은 30.3%이며,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NGO는 35%인 43개로 이직은 67.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이 NGO 종사자의 이직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lt;표 III-11&gt; 교육훈련과 이직률(2002년)

교육훈련여부	단체수(%)	이직률
실시함	80(65%)	30.3
실시하지 않음	43(35%)	67.5
전체	123(100%)	42.9

자료: Yoon, Soonchul(2003). 전개논문.

교육훈련일수와 NGO 직원의 이직률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31개 NGO 종사자의 이직률은 78.0%의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교육훈련일수가 많은 단체일수록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III-12&gt; 교육훈련 일수와 이직률

단체/랭킹*	교육훈련 일수	이직률**
1/1-31	0	78.0
2/32-63	6.8	36.0
3/64-93	25.7	35.0
4/94-123	164	24.7

\* 2001년과 2002년의 이직률 합계  
 자료: Yoon, Soonchul(2003). 전개논문.

교육훈련일수와 이직률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듯이 교육훈련비와 이직률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훈련비가 많을수록 이직률은 낮아지고 있다. 즉, 교육훈련비가 전혀 없는 단체의 이직률은 77.8%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직원의 교육훈련비를 많이 지출하는 NGO는 이직률이 17.8%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3> 교육훈련비용과 이직률

(단위: %)

단체/랭킹*	비용	이직률
1/1-31	0	77.8
2/32-63	116	41.0
3/64-93	797	36.6
4/94-123	4,427	17.8

자료: Yoon, Soonchul(2003). 전계논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NGO 종사자의 교육훈련은 임금과 더불어 이직률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NGO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빈도는 다른 직업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지표로 시민사회단체의 이직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의 발전 배경에는 시민들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NGO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공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단체의 의견과 활동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은 NGO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NGO 활동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는 독특한 지표로 유의미한 변수가 된다. 둘째, 활동과는 별개로 NGO 활동이 대중매체에 보도되는 것은 NGO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중매체 보도 빈도가 가장 낮은 그룹의 이직률은 78.4%로 매우 높고, 대중매체 보도 빈도가 가장 높은 그룹의 이직률은 23.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중매체에 보도 빈도가 높아질수록 이직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lt;표 III-14&gt; 대중매체 보도 빈도와 이직률

단체/랭킹*	뉴스보도 빈도	이직률(%)
1/1-31	1.58	78.4
2/32-63	8.1	37.0
3/64-93	27.9	32.9
4/94-123	423	23.6

주: 대중매체의 보도빈도는 종합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와 연합뉴스 빈도를 사용했다. 카인즈의 조사기간은 2001년 6월 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한정하였다. 연합뉴스의 경우 조사 기간은 2001년 1월 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이다.

자료: Yoon, Soonchul(2003). 전개논문.

조직형태와 이직률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독립조직체의 이직률은 68.1%이며 지부 조직은 33.0%, 연합 조직은 18.0%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체의 안정성과 체계성이 상근직원의 이직률을 낮춘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직형태는 단체의 제도화, 안정, 자기만족과 사회적 지위 등의 비금전적 혜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체의 형태가 연합체인 경우와 개별단체의 연합인 경우, 전국적인 망을 갖춘 지부의 경우에는 제도화와 안정이 개별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규모가 큰 단체와 중앙단체의 제도화와 안정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직률과 단체가 위치한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울에 위치한 NGO 종사자들의 이직률은 27.9%, 대도시는 30.4%, 중소도시는 58.7%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즉, 도시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이직률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규모가 이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단체의 변화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6. 시사점

지금까지 NGO 상근자의 이직률과 NGO의 상태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GO의 이직률은 2001년 18.0%, 2002년 24.2%로 전체

적인 이직률이 높아져 가는 추세이다. 이직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임금, 임금 외적인 부가혜택, 교육훈련, 매체보도 빈도, 단체형태와 NGO가 위치한 지역 등이다. 높은 이직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NGO 상근직원의 임금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상태의 상근직원의 임금은 매우 낮아 상근직원의 재정적 안정은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좀더 유능한 인력을 시민단체 활동으로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NGO의 성패는 종사자의 자질에 달려 있다. 과거, 경제적인 요인은 능력을 갖춘 인력을 NGO 활동에 끌어들이는 데는 주요한 요소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미래직업을 결정할 때 경제적인 요인이 보다 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둘째, NGO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실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상술했듯이, NGO의 일반적인 채용방식은 내부 추천제에서 공개채용으로 변화되고 있다. NGO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전에 자신의 경험이나 훈련이 전문한 경우를 대비해서 단체에서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이 요인이 과거에는 NGO 활동의 성공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지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상근직원의 교육훈련은 단체의 발전을 위한 능력과 잠재성을 키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셋째, NGO는 전체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NGO는 사회의 건전성과 시민 활동을 반영한 NGO활동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재정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NGO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와 대학을 비롯한 여타 사회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NGO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보다 다양하게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제3절 NGO 교육훈련사업 실태조사

## 1. 조사 개요

「한국민간단체총람2003」에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민간단체 290개소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의 NGO 355개를 대상(중복된 NGO 제외 총 500여 단체)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연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면담, 전화 및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8월 31일까지 조사에 응답한 NGO는 77개였다.

응답 완료된 NGO 중 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로 등록된 곳은 전체의 32.5%인 25개에 불과하였다. 법인격 여부로 구분하면 사단법인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10.4%, 사회복지법인 5.2% 등의 순이며, 재단법인은 3.9%였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는 전체의 83.1%인 64개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III-15&gt; 조사대상 NGO의 조직형태

(단위: 개, %)

단체형태	독립체	국내지부	국내연맹	국제지부	국제연맹	전체
사례수	56	11	5	4	1	77
비율	72.7	14.3	6.5	5.2	1.3	100.0

조사대상 NGO의 형태를 살펴보면, 독립체가 72.7%인 56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국내 단체의 지부가 11개 단체로 14.3%를 차지하였고, 국내 단체 연맹이 5개 단체로 6.5%, 국제단체의 지부가 4개 단체, 5.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6> 조사대상 NGO 분야

(단위: 개, %)

분야	사회일반	사회서비스	노동	교육학술	환경	문화언론	종교	전체
사례수	36	22	10	5	2	1	1	77
비율	46.8	28.6	13.0	6.5	2.6	1.3	1.3	100.0

NGO 교육훈련사업 실태 조사에 참여한 NGO는 사회일반분야가 46.8%인 36개로 가장 많고, 사회서비스분야가 28.6%인 22개, 노동·농어민분야가 13.0%인 10개, 교육·학술분야가 6.5%인 5개, 문화·언론 및 종교분야가 각각 1.3%인 1개 등 총 77개의 NGO가 참여하였다.

<표 III-17> 조사대상 NGO 세부 활동 분야

(단위: %)

분야	세부 분야	
사회일반 (46.8%)	시민사회일반	19.5
	여성	16.9
	법·행정·정치	3.9
	인권추모사업회	2.6
	소비자생활	2.6
	평화통일민족	1.3
	사회 서비스 (28.6%)	사회복지
자원봉사구호	7.8	
건강보건의료	5.2	
노동 (13.0%)	농어민	11.7
	노동	1.3
교육학술 (6.5%)	교육	5.2
	학회	1.3
환경 (2.6%)	환경	2.6
문화언론 (1.3%)	언론출판	1.3
종교 (1.3%)	종교	1.3
전체		100.0

이들 NGO의 주요 활동분야는 사회일반분야에서는 시민사회일반(19.5%)과 여성(16.9%), 사회서비스에서는 사회복지(15.6%)와 자원봉사구호(7.8%), 노동·농어민분야에서는 농어민(11.7%)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NGO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8> 조사대상 NGO의 회원수

(단위: 개, %)

회원수	400명 미만	400-3300명 미만	3300명 이상	무응답	전체
사례수	20	27	21	9	77
비율	26.0	35.1	27.3	11.7	100.0

조사 대상 NGO의 평균 회원수는 창립 당시 3,321명에서 2004년 7월 기준 7.8배인 26,00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회원수가 400-3,300명이 27개로서 35.1%였고, 400명 미만이 20개소 26.0%이며, 3,300명 이상이 21개소로 27.3%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체 NGO의 경우 창립당시 3,745명에서 현재 9,948명으로 2배 증가하여 지부형태나 연맹체 형태의 NGO보다 회원 규모도 작았으며 회원 증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조사대상 NGO의 상근직원 수

(단위: 개, %)

상근직원수	1-3명	4-6명	7명 이상	전체
사례수	28	16	33	77
비율	36.4	20.8	42.9	100.0

상근직원의 수도 창립당시 평균 5명에서 2004년 7월 기준 평균 13명으로 2.6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비상근 직원수는 평균 49명으로 나타났다. 상근직원이 1-3명이라고 응답한 NGO가 25개인 39.7%로 가장 많고, 6명 이상이 24개 단체

인 38.1%, 2-6명이 14개 단체인 22.2%의 순으로 대부분의 NGO 단체가 상근 직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체 NGO의 경우는 상근직원 10명, 비상근 직원 10명으로 그 규모가 더욱 작았다

<표 III-20> 조사대상 NGO의 상근직원 채용방식

(단위: 개, %)

채용방식	사례수	비율
공채	45	58.4
회원의 소개/ 권유	10	13.0
전문가소개	7	9.1
자원	7	9.1
해당 NGO직접권유	5	6.5
기타	3	3.9
전체	77	100.0

상근직원의 채용방식은 공채가 45개에 달해 전체 NGO의 과반수(58.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외에 10개 단체가 회원의 소개나 권유가 13.0%의 분포를 보였고, 또한 전문가의 소개로 채용하는 경우가 7개 단체로 9.1%를 차지했다.

NGO 상근직원은 63.4%가 20대, 30대이며, 83.9%가 대졸 이상으로 나타나 인력 구성은 젊은 고학력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1> 상근직원 인적자원분포

(단위: 개, %)

인적자원분포					
연령	사례수	비율	학력	사례수	비율
20대 이하	152	18.0	고졸이하	37	4.4
30대	384	45.4	전문대졸	99	11.7
40대	141	16.7	대졸	541	63.9
50대 이상	169	20.0	대학원졸	169	20.0

NGO의 인력구성은 젊은 고학력인데 반해, 상근직원의 임금은 연간 총액으로 평균 최저 1,060만원에서 최고 1,940만원을 기록하고 있어 재정이 취약한 NGO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표 III-22> 연간총액임금

(단위: 개, %)

연간총액임금	최저	1,060만원
	최고	19,40만원

2003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NGO의 총 예산규모는 평균 6억 2천 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예산 규모가 1억 이하인 단체도 20.8%로 16개 단체가 있었으며, 1-3억의 예산규모를 가진 단체는 22개, 28.6%를 차지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3억 이상인 단체는 23개의 단체로 29.9%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23> 총예산규모

(단위: 개, %)

예산규모	1억 이하	1억-3억 이하	3억 초과	무응답	전체
사례수	16	22	23	16	77
비율	20.8	28.6	29.9	20.8	100.0

평균적으로 이 가운데 연회원 수입이 약 2억원, 정부 지원금이 약 1억 5천만원, 사업수익이 1억 1천 5백만원, 기부금이 약 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NGO의 예산규모에서 회원 수입과 정부 지원금이 가장 큰 수입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III-24&gt; 예산의 구성

세부 구성	금액(백만원)	비율(%)
연회원수입	199	31.6
정부지원금	148	23.5
사업수익	115	18.2
기부금	101	16.0
기타예산	67	10.7
전체	629	100.0

NGO의 예산 중 교육에 관련된 지출규모를 분석해 보면 교육훈련사업 관련으로 약 6천 4백만원을, 자체 직원 교육 및 연수 비용으로 2천 백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NGO 단체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시민교육이 31개소에서 실시하여 40.3%의 분포를 보여 가장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도 29곳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어, 37.7%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lt;표 III-25&gt; 지출의 구성

세부 구성	금액(백만원)	비율(%)
교육훈련사업관련	64	12.2
자체직원 교육 및 연수	21	4.0
기타 지출	439	83.8
전체	524	100.0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 캠페인(33.8%), 대정부 정책건의(29.9%), 조사 연구 출판(24.7%), 상담활동(24.7%), 자원 봉사 활동(20.8%), 감시활동(20.8%)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t;표 III-26&gt; 중점사업(중복응답)

(단위: 개, %)

중점사업	사례수	비율
시민교육	31	40.3
연대활동	29	37.7
홍보 캠페인	26	33.8
대정부 정책건의	23	29.9
상담활동	19	24.7
조사연구출판	19	24.7
자원봉사활동	16	20.8
감시활동	16	20.8
비영리사업	13	16.9
직업교육	7	9.1
재화와 서비스 제공	6	7.8
회원 및 직원 교육 및 관리 사업	5	6.5
공동체 생활	4	5.2
친목상호부조 활동	3	3.9
기타	14	18.2

이를 주요 활동분야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일반 단체는 시민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단체가 4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상담활동(36.1%)을 주로 하고 있었으며, 사회 서비스 단체는 ‘사회 서비스’라는 단체의 목적에 맞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50.0%), 다음으로 조사출판연구(36.4%)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 단체는 연대활동(50.0%), 대정부 정책 건의(40.0%), 홍보 캠페인(40.0%) 등을 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NGO 단체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시민교육이 31개소에서 실시하여 40.3%의 분포를 보여 가장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도 29곳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어, 37.7%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lt;표 III-27&gt; 활동분야별 단체의 중점사업

(단위: %)

사회일반 단체		사회서비스 단체		노동단체	
시민교육	47.2	자원봉사활동	50.0	연대활동	50.0
상담활동	36.1	조사출판연구	36.4	대정부정책건의	40.0
				홍보 캠페인	40.0

## 2. NGO의 정부지원에 관한 의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61개 단체인 79.2%의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III-28&gt;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

(단위: 개, %)

정부지원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사례수	61	15	1	77
비율	79.2	19.5	1.3	100.0

이와 같이 대부분의 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NGO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지원 방법으로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74.0%인 57개 단체가 예산상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뒤를 이어, 세제상의 혜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19.5%인 15개 단체로 나타나 주로 경제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익을 내지 않는 NGO의 특성상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lt;표 III-29&gt; NGO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지원 방법

(단위: 개, %)

정부의 바람직한 지원방법	사례수	비율
예산상의 지원	57	74.0
세제상의 혜택	15	19.5
사무실 제공	3	3.9
인력지원	1	1.3
사고의 전환 필요	1	1.3
전체	77	100.0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이유에 관해서는 26.0%인 20개 단체가 재정상으로 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15.6%인 12개 단체가 보다 의욕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고 응답했다. 또한, 14.3%인 11개 단체는 재정이 사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고 응답했다.

&lt;표 III-30&gt;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이유

(단위: 개, %)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이유	사례수	비율
재정상 문제로 운영이 어려움	20	26.0
의욕적인 활동을 위해	12	15.6
사업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므로	11	14.3
가장 실질적이며 정당하기 때문	6	7.8
비영리 단체이므로 재정자립이 어려움	5	6.5
직원의 생계보장 및 전문화 체계화를 위해	4	5.2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	3	3.9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2	2.6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	2	2.6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자 관계 선행 필요	2	2.6
기타	8	10.4
전체	77	100.0

NGO 단체가 느끼는 정부 지원 예산 사업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비판력적인 예산 운용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23.4%가 응답하였으며, 그밖에 본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곤란을 느낀다는 응답이 15.6%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NGO의 본연적 특성인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재정적 어려움 간에 딜레마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31> 정부지원예산 사업의 장애요인

(단위: 개, %)

정부지원예산 사업의 장애요인	사례수	비율
비판력적인 예산운용방식	36	46.8
정부의 지나친 간섭	18	23.4
본연의 목적사업 수행곤란	12	15.6
장애요인 없음	2	2.6
실질적 내용보다 서류구비 중심의 예산집행	1	1.3
형식적인 틀에 짜여진 자료를 원하는 것	1	1.3
무응답	7	9.1
전체	77	100.0

### 3. 교육훈련 프로그램

#### 가. 일반인 및 회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일반인 및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농업 교육이 21.9%, 117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다른 NGO 단체에 비해 농업관련 NGO의 농업교육이라는 집중된 업무 특성과 해당 단체의 많은 교육 프로그램 수행 실적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교육이 12.2%, 65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 인터넷이나 실무자 교육 등의 전문교육이 11.0%, 59개 프로그램, 청소년 성교육이 9.2%, 49개 프로그램, 문화 교육이 8.1%, 43개 프로그램, 환경교육이 6.9%, 37개 프로그램, 부모 자녀 교육이 5.2%, 여성 교육 4.5% 등이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2> 일반인 및 회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단위: 개, %)

	사례수	비율
농업교육	117	21.9
자원봉사교육	65	12.2
전문교육	59	11.0
청소년성교육	49	9.2
문화교육	43	8.1
환경교육	37	6.9
부모자녀교육	28	5.2
여성교육	24	4.5
심리상담교육	19	3.6
공동체교육	18	3.4
리더십교육	10	1.9
주민자치교육	7	1.3
교육관련	6	1.1
소비자교육	6	1.1
노인교육	3	0.6
기타	43	8.1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각 단체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사회 일반 단체의 경우 직무관련 전문교육을 17.6%, 문화교육을 16.3%, 청소년 성교육을 15.5% 실시하고 있었다. 사회 서비스 단체에서는 자원봉사 교육이 45.9%의 분포로 가

장 높았고, 심리상담교육은 10.7%를 나타내고, 노동·농민 단체의 경우는 85.4%가 농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표 III-33> 일반인 및 회원 대상 활동분야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단위: %)

사회일반 단체		사회서비스 단체		노동·농민 단체	
전문교육	17.6	자원봉사교육	45.9	농업교육	85.4
문화교육	16.3	심리상담교육	10.7	주민자치교육	4.4
청소년성교육	15.5	청소년성교육	9.8	부모자녀교육	2.2

각 부문의 교육훈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업교육의 대상은 일반인이 89.0%의 참가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538명이 참석하고, 7.9시간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1인당 수강료는 71,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일반인 및 회원 대상 농업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교육훈련 대상(%)		참가인원(명)		교육진행시간(시간)		수강료(%)	
일반인	88.0	30명이하	1.7	4시간이하	0.9	5만원이하	2.9
		31~100명	44.4	5~6시간	4.7	5~7만원	95.1
회원	12.0	101명이상	53.8	7시간이상	94.3	7만원초과	2.0
		평균	538명	평균	7.9시간	평균	71,000원

다음으로 자원봉사교육은 주로 회원(87.3%)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 146명이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8시간 교육을 실시하며, 1인당 수강료는 6,200원으로 나타났다.

&lt;표 III-35&gt; 일반인 및 회원 대상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교육훈련 대상(%)		참가인원(명)		교육진행시간(시간)		수강료(%)	
일반인	88.5	30명이하	34.4	4시간이하	37.3	5만원이하	70.0
		31~100명	23.4	5~6시간	15.3	5~7만원	15.0
회원	11.5	101명이상	42.2	7시간이상	47.5	7만원초과	15.0
		평균	140명	평균	5.8시간	평균	62,000원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의 대상은 대부분이 일반인(86.0%)이었으며, 평균 131명이 참석하여, 4.1시간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1인당 수강료는 4만6천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었다.

&lt;표 III-36&gt; 일반인 및 회원 대상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단위: %)

교육훈련 대상(%)		참가인원(명)		교육진행시간(시간)		수강료(%)	
일반인	86.0	30명이하	47.7	4시간이하	71.9	5만원이하	87.5
		31~100명	27.3	5~6시간	12.5	5~7만원	0.0
회원	14.0	101명이상	25.0	7시간이상	15.6	7만원초과	12.5
		평균	131명	평균	4.1시간	평균	46,000원

또한 여성교육의 대상도 일반인(82.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72명이 평균적으로 참석하여, 4.6시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1인당 수강료는 2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37> 일반인 및 회원 대상 여성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단위: %)

교육훈련 대상(%)		참가인원(명)		교육진행시간(시간)		수강료(%)	
일반인	82.6	30명이하	63.6	4시간이하	50.0	5만원이하	27.3
		31~100명	13.6	5~6시간	27.3	5~7만원	0.0
회원	17.4	101명이상	22.7	7시간이상	22.7	7만원초과	72.7
		평균	72명	평균	4.6시간	평균	270,000원

마지막으로 전문교육은 교육대상이 주로 회원(63.2%)이었으며, 평균 69명이 참석하여, 6.7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수강료는 6만9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8> 일반인 및 회원 대상 전문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단위: %)

교육훈련 대상(%)		참가인원(명)		교육진행시간(시간)		수강료(%)	
일반인	36.8	30명이하	60.7	4시간이하	25.0	5만원이하	70.4
		31~100명	23.2	5~6시간	3.8	5~7만원	7.4
회원	63.2	101명이상	16.1	7시간이상	71.2	7만원초과	22.2
		평균	69명	평균	6.7시간	평균	6만9천원

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은 일반인 및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전체 302개로서 그 중 농업교육이 36.1%인 109개로 가장 많고, 자원봉사 교육이 20.5%, 청소년 성교육이 11.3%, 여성교육이 4.3%, 소비자 교육이 4.0%, 전문가 교육 및 환경교육이 3.6% 등의 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9>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단위: 개, %)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례수	비율
농업교육	109	36.1
자원봉사	62	20.5
청소년성교육	34	11.3
여성교육	13	4.3
소비자교육	12	4.0
전문가교육	11	3.6
환경교육	11	3.6
리더십교육	10	3.3
노인교육	7	2.3
부모자녀교육	5	1.7
민주시민교육	5	1.7
기타	23	7.6
전체	302	100.0

각 단체별로 보았을 때, 사회일반 단체의 경우 청소년 성교육(19.0%), 소비자 교육(14.3%), 민주시민 교육(6.0%)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서비스 단체에서는 자원봉사 교육(59.4%), 청소년 성교육(17.8%), 여성교육(5.0%)을, 노동·농민 단체의 경우는 농업교육(93.6%)을 주로 실시하고 있었다.

<표 III-40>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활동분야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단위: %)

사회일반 단체		사회서비스 단체		노동·농민 단체	
청소년 성교육	19.0	자원봉사	59.4	농업 교육	93.6
소비자 교육	14.3	청소년 성교육	17.8	환경 교육	2.8
민주시민 교육	6.0	여성 교육	5.0	전문가 교육	1.8

교육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첫째, 농업교육의 경우 대상은 주로 일반인(69.2%)이었으며, 평균적으로 13명 참석하고, 7.7시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금은 주로 정부부처(66.7%)와 군 이하의 지자체로부터 평균 6백2십만원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41>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농업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교육훈련 대상(%)		참가인원(명)		교육진행시간(시간)		지원기관(%)		지원예산(%)	
일반인	89.9	50명이하	34.9	4시간이하	5.5	정부부처	83.3	300만원이하	66.7
		51~100명	27.0	5~6시간	3.7	지자체(군)	16.7	300~1000만원	0.0
회원	10.1	101명이상	38.1	7시간이상	90.8	기타	0.0	1000만원초과	33.3
		평균	13명	평균	7.7시간	-	-	평균	6백2십만원

자원봉사 교육은 회원이 주요 대상(66.1%)이었으며, 평균적으로 72명이 참석하고, 5.1시간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지원금은 주로 시 이상의 지자체(55.7%)로부터 평균 5백2십만 원을 지원 받고 있었다.

<표 III-42>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단위: %)

교육훈련 대상(%)		참가인원(명)		교육진행시간(시간)		지원기관(%)		지원예산(%)	
일반인	33.9	50명이하	9.2	4시간이하	39.0	지자체(시)	58.3	300만원이하	45.5
		51~100명	40.4	5~6시간	45.8	자원봉사	12.5	300~1000만원	45.5
회원	66.1	101명이상	50.5	7시간이상	15.3	정부부처	10.4	1000만원초과	10.0
		평균	72명	평균	5.1시간	-	-	평균	5백2십만원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인(94.1%)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151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참석하고, 22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주로 시 이상의 지자체(78.1%)로부터 평균 3백3십만 원을 지원 받고 있었다.



<표 III-4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단위: %)

교육훈련 대상(%)		참가인원(명)		교육진행시간(시간)		지원기관(%)		지원예산(%)	
일반인	94.1	50명이하	32.4	4시간이하	84.2	지자체(시)	78.1	300만원이하	59.3
		51~100명	17.6	5~6시간	0.0	지자체(군)	9.4	300~1000만원	37.0
회원	5.9	101명이상	50.0	7시간이상	15.8	국가기관	9.4	1000만원초과	3.7
		평균	151명	평균	3.7시간	-	-	평균	3백3십만원

여성교육 역시 일반인(58.3%)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 42명이 참석하여, 4.6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지원금은 주로 정부부처(41.7%)와 국가기관(25.0%)으로부터 평균 9백2십만원을 받고 있었다.

<표 III-44>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여성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단위: %)

교육훈련 대상(%)		참가인원(명)		교육진행시간(시간)		지원기관(%)		지원예산(%)	
일반인	61.5	50명이하	83.3	4시간이하	63.6	정부부처	50.0	300만원이하	0.0
		51~100명	8.3	5~6시간	0.0	국가기관	30.0	300~1000만원	66.7
회원	38.5	101명이상	8.3	7시간이상	36.4	민간재단	10.0	1000만원초과	33.3
		평균	42명	평균	4.6시간	-	-	평균	9백2십만원

다. 공통사항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 및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에 대한 물음에는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70.1%로 높게 나타났다. 뒤이

어 마땅한 교육훈련 장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7%였으며, 다음으로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29.9%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단체내 관심의 결여가 문제라는 응답률은 11.7%, 참가 대상자가 부족은 23.4%이고, 프로그램의 강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0.8%로 NGO의 재정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욱 많은 교육훈련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표 III-45> 회원 및 일반인 교육훈련시 애로사항(중복응답)

(단위: 개, %)

회원·일반인 교육훈련 시 애로사항	사례수	비율
예산부족	54	70.1
교육훈련 장소	29	37.7
교육훈련 장비부족	23	29.9
참가대상자 부족	18	23.4
강사부족	16	20.8
프로그램 내용 준비	14	18.2
참여자의 출석률 부족	12	15.6
참석자 기초지식 결여	12	15.6
단체내 관심결여	9	11.7
홍보	1	1.3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애로사항은 예산부족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훈련 장소의 부족이 22.1%, 참가대상자부족이 20.8%, 강사부족이 18.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lt;표 III-46&gt;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단위: 개, %)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시 애로사항	사례수	비율
예산 부족	38	49.4
교육훈련 장소	17	22.1
참가 대상자 부족	16	20.8
강사부족	14	18.2
교육훈련 장비부족	12	15.6
프로그램 내용준비	11	14.3
참석자 기초지식 결여	11	14.3
참여자의 출석률 부족	9	11.7
단체내 관심결여	7	9.1
해당없음	2	2.6
인력부족	1	1.3
단체 활동가들의 준비 부족	1	1.3

상근 직원 및 NGO 활동가 교육훈련시 애로사항은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예산 부족이 63.6%로 두드러진 가운데, 교육훈련 장비의 부족(29.9%)과 강사의 부족(23.4%),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23.4%), 교육훈련장소(15.6%)등이 주요한 애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III-47&gt; 상근직원 및 NGO 활동가 교육훈련시 애로사항(중복응답)

(단위: 개, %)

상근직원 및 활동가 교육훈련 시 애로사항	사례수	비율
예산부족	49	63.6
교육훈련장비부족	23	29.9
강사부족	18	23.4
프로그램내용준비	18	23.4
교육훈련장소	12	15.6
참여자의출석률부족	11	14.3
단체내관심결여	11	14.3
참가대상자부족	10	13.0
바쁜관계로 시간내기힘듦	6	7.8
참석자기초지식결여	2	2.6
업무공백으로 인한 영향	1	1.3

각 단체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만족도나 요구조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 대상 단체의 78.0%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응답은 46.8%로 나타났으며, 매번 실시하지는 않지만 가끔 실시한다는 단체는 31.2%로 나타나 교육훈련에 대한 사후관리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8> 교육훈련생 대상 만족도나 요구조사 실시여부

(단위: 개, %)

교육프로그램 후 만족도 조사 실시여부	사례수	비율
매번한다	36	46.8
가끔한다	24	31.2
한적없다	8	10.4
무응답	9	11.7
전체	77	100.0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담당 상근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9개 단체인 63.6%의 단체에 상근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나, 이는 NGO의 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대부분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49> 교육 담당 상근직원 여부

(단위: 개, %)

교육담당 상근직원	있다	없다	전체
사례수	49	28	77
비율	63.6	36.4	100.0

새로운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은 76.6%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지역내 NGO와 공동 개발(3.9%), 전문가에게 의뢰(2.6%)하거나 타 기관의 프로그램을 모방(2.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단위: 개, %)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례수	비율
자체개발	59	76.6
지역내 NGO와 공동개발	3	3.9
전문가의뢰	2	2.6
타기관 프로그램 모방	2	2.6
타지역 NGO와 공동개발	1	1.3
무응답	10	13.0
전체	77	100.0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비 중 교육훈련교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평균 125,000원이고, 최저 75,000원에서 209,000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사료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사료	금액
최저	75,000원
최고	209,000원
평균	125,000원

교육훈련프로그램 강사의 충원 방식은 연고자의 소개가 가장 높은 45.5%이고, 다른 NGO의 도움은 18.2%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자 소개(5.2%)나 공개 채용(3.9%)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lt;표 III-52&gt;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사 총원방식

(단위: 개,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사 총원방식	사례수	비율
연고자의 소개	35	45.5
다른 NGO의 도움	14	18.2
자원봉사자 소개	4	5.2
공개채용	3	3.9
담당직원이 직접 섭외	3	3.9
전문가를 찾음	2	2.6
직원중에서	1	1.3
관련분야 교수	1	1.3
무응답	12	15.6
전체	77	100.0

향후에 일반인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72.7%의 단체에서 향후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NGO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lt;표 III-53&gt; 향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계획 유무

(단위: 개, %)

향후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계획 유무	사례수	비율
있다	56	72.7
없다	21	27.3
전체	77	100.0

향후 운영 계획 중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단체의 70.2%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9.8%는 회원

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시민교육이 20.4%를 차지하였고, 자원봉사 교육이 12.6%, 리더십 교육이 9.7%를 차지하고 있었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을 20.9%의 단체가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리더십 교육이 18.6%, 농업 교육은 9.3%의 단체가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시민교육	25	17.0
리더십교육	18	12.2
전문교육	18	12.2
자원봉사교육	17	11.6
환경교육	9	6.1
농업교육	8	5.4
청소년성교육	8	5.4
가정교육	5	3.4
여성교육	4	2.7
노인교육	3	2.0
심리상담교육	2	1.4
기타	30	20.4
전체	147	100.0

<표 III-55> 대상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

(단위: %)

일반인		회원	
시민교육	20.4	전문교육	20.9
자원봉사교육	12.6	리더십교육	18.6
리더십교육	9.7	농업교육	9.3

## 라. NGO 상근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조사단체에 사회보험 및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고용보험의 경우는 92.6%가 가입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91.2%의 단체가 가입하여 비교적 높은 가입률을 보인 반면, 건강보험은 80.9%의 단체가 가입했으며, 퇴직금 제도는 75.0%의 단체에서 가입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었다.

&lt;표 III-56&gt; 사회보험 및 퇴직금 제도 도입

(단위: 개, %)

사회보험 및 퇴직금제도	사례수	비율
고용보험	63	92.6
국민연금	62	91.2
산재보험	59	86.8
건강보험	55	80.9
퇴직금	51	75.0

2001년부터 2004년 7월까지 이루어진 직원 및 NGO 활동가의 연간 교육훈련 및 연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159개가 운영되었으며, 그 중 실무교육이 60.4%이고, 국제교류가 18.2%, 리더십 교육이 17.0%, 성역할 교육이 4.4%순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lt;표 III-57&gt; 직원 및 NGO 활동가 대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

(단위: 개, %)

NGO 활동가 대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사례수	비율
실무 교육	96	60.4
국제교류	29	18.2
리더십 교육	27	17.0
성역할 교육	7	4.4
전체	159	100.0



각 단체별로 전반적으로는 실무교육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회 서비스 단체의 경우 국제 교류의 비율이 3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 형태는 주로 단체 지원이 82.1%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비는 9.4%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 지원은 17.6%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8.3%는 비상근 활동가도 동시에 교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NGO 상근직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첫째, 실무교육은 평균 6시간을 교육하며, 5.3명이 참석하고, 비용은 34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 중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은 NGO는 84.4%를 차지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주로 단체 지원으로 이루어 졌다고 응답한 단체가 84.3%이며, 87.1%의 단체가 비상근 활동가와 동시에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58> 실무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단위: %)

참가인원		교육진행시간		지원형태		비용	
1명	53.9	4시간이하	33.3	단체지원	84.3	5만원이하	22.6
2~3명	29.2	5~6시간	18.5	자비	11.4	5~20만원	47.2
4명이상	16.9	7시간이상	48.1	기타	4.3	20만원초과	30.2
평균	5명	평균	6.0시간	-	-	평균	34만원
고용보험 지원여부				비상근 활동가 동시 교육여부			
받음		84.4		별도 교육		87.1	
안받음		15.6		동시 교육		12.9	

둘째, 국제교류는 평균 7시간 교육에 2.8명이 참석하였으며, 비용은 1백4십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II-59&gt; 국제교류 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단위: %)

참가인원		교육진행시간		지원형태		비용	
1명	42.9	4시간이하	15.4	단체지원	81.8	5만원이하	0.0
2~3명	32.1	5~6시간	7.7	자비	9.1	5~20만원	37.5
4명이상	25.0	7시간이상	76.9	기타	9.1	20만원초과	62.5
평균	3명	평균	7.0시간	-	-	평균	140만원

마지막으로 리더십 교육은 평균 5시간 교육이 실시되며 2.5명이 참석하였고, 비용은 75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II-60&gt;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단위: %)

참가인원		교육진행시간		지원형태		비용	
1명	31.8	4시간이하	53.3	단체지원	88.9	5만원이하	0.0
2~3명	45.5	5~6시간	6.7	자비	5.6	5~20만원	53.8
4명이상	22.7	7시간이상	40.0	기타	5.6	20만원초과	46.2
평균	3명	평균	5.0시간	-	-	평균	75만원

#### 마.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GO 운영의 어려움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2003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NGO의 총 예산규모는 평균 3억 6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예산 규모가 1억 이하인 단체도 22.2%로 14개 단체가 있었으며, 1-3억의 예산규모를 가진 단체는 19개, 30.2%를 차지했다. 평균적으로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이 약 1억, 사업 수익이 8천 4백만원, 기부금이 7천만원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연회원 수입이 6천 5백만원 선으로 나타나고 있어 NGO의 예산규모에서 정부 지원금이 가장

큰 수입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NGO는 교육훈련전문가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상근직원의 수가 평균 11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훈련 전담자가 있다는 응답이 65% 내외에 지나지 않았다.

셋째, 교육훈련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인 및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농업교육이 29.3%로 나타나 가장 높았는데, 이는 조사대상에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NGO 중 농업부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교육이 13.8%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밖에 청소년 성교육은 10.0%, 부모 자녀 교육 5.5%, 여성교육 5.3%, 심리상담 교육 2.8%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역시 전반적으로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땅한 교육훈련 장소의 부족, 교육훈련장비의 부족, 참가대상자의 부족, 프로그램의 강사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교육훈련사업실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4 장 NGO의 교육훈련사업 사례

조사된 NGO 중 비교적 교육훈련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시민교육, 직업훈련, 지역교육 및 농업교육부문의 대표적인 NGO의 교육훈련사업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제1절 시민교육 사례: (사)인터넷 시민학교

NGO가 펼치고 있는 시민교육의 현실에 대한 파악과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NGO 중에서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교육의 사례로 NGO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사)인터넷 시민학교」(<http://www.goodcitizen.or.kr>)<sup>5)</sup>를 두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부설교육기관으로 「(사)인터넷 시민학교」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NGO가 별도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필요와 여건에 따라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몇몇의 NGO가 교육기

---

5) 이 부분에서는 이영안(2003)의 논문을 많이 참조하였다.

관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곳에 비하여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사)인터넷 시민학교」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꾸준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NGO 중에서 부설교육기관을 두고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는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의 「참여사회아카데미」, 민주개혁국민연합(<http://www.ksr.org>)의 「민주시민교육원」, 한국자유총연맹(<http://www.kfl.or.kr>)의 「민주시민교육센터」 등이 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1999년 9월 9일 시민운동가와 교수, 변호사, 기업인, 시민 등 100여명의 발기인들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증대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을 펼친다는 목표 아래 예산감시운동, 개인정보보호운동, 인터넷 시민운동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사업부서는 예산감시 시민행동, 좋은 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사)인터넷 시민학교, 공익소송센터, 정보인권시민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익소송센터」는 단체의 역점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 내지 공동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다양한 대응활동을 병행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법 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4년의 중점적 운동은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립운동, 시민권의 침해,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대응활동, 단체 중점사업에 대한 지원 및 공동 활동 등이다.

「(사)인터넷 시민학교」는 웹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소비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각한 성찰적 시민양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에는 기본강좌 이외에 워크숍, 토론회, 공개 강좌 등을 새롭게 계획하였다.

### 1. 설립목적 및 현황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초창기에는 예산감시시민행동, 정보인권국,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 등 사업부서별로 각자 교육을 기획·실시하였으나 전문적인 시민교육 담당 기구의 필요성을 느껴 「(사)인터넷 시민학교」를 따로 설립하게 되었다.

「(사)인터넷 시민학교」는 웹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소비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각한 성찰적 시민양성’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이후 2002년 3월에 사단법인화 되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성인을 위한 시민교육,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계층별 교육,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교재·솔루션 개발 및 조사 연구, 기타 시민학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5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인터넷 시민학교」는 2000년에 기획하여 2001년 이사회를 조직하고 법인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2년 2월에는 법인화가 허가되어 200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전 사단법인화 하지 않았을 때와 법인화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시민학교의 재정이 ‘함께 하는 시민행동’과 분리되어, 「(사)인터넷 시민학교」의 운영은 이사들의 회비로 충당하게 되었고 그 이외의 회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사)인터넷 시민학교」의 설립 초기에는 log-in 제도가 있어서 회원들을 관리했으며, 강의별 Q&A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log-in 제도를 통한 회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그것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두 번째 강좌 이후 log-in 제도를 폐지하여 지금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인터넷 시민학교」에 들어가서 원하는 강의와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게 되었다.

강의별 Q&A는 운영되지 않지만 그 대신에 시민학교 전체의 게시판이 이것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전체 게시판을 통해서 강의에 관한 내용이나 시민학교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무국에서 2인의 상근활동가가 재직하고 있으며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사업 수익금과 기타 수익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인터넷 시민학교」는 인터넷만을 이용하여 시민교육을 실시하고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사)인터넷 시민학교」의 교육은

시민학교 단독으로 진행된다기 보다는 ‘함께 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진행되고 볼 수 있다. 시민행동의 상근활동가들이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기도 한다.

비록 사단법인화 하여 형식적으로는 ‘함께 하는 시민행동’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 NGO들의 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학교가 단독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사)인터넷 시민학교」의 강의는 2000년 3월 첫 강좌를 시작하였다. 강좌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강좌는 2000년 3월에서 2000년 9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실제 학교의 느낌을 갖도록 문화매점, 학교 보건소, 학교 앞 상가 등을 구성하여 학습생활과 만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획을 하여, 입문과정으로 한국사회 바로보기, 민주시민의 공공철학, 하승창의 NGO이야기와 법, 환경, 문화, 예산, 경제의 과목을 개설하여 공공성의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2000년 8월에서 2000년 10월에는 여름방학 특강을 구성하여 인권, 환경, 평화, 반전, 난민 등 부문별 시민운동의 이슈들을 볼 수 있는 미니강좌를 운영하였다. 세 번째 강좌는 2000년 9월에서 2001년 7월 사이에 실시된 것으로 시민단체의 교육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시민단체 상근자, 회원과 대학생이 많은 방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시민성 키워드로 보기’, ‘한국사회운동사’, ‘시민운동 사례연구’, ‘운동하는 사람들’ 등 시민운동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강좌를 기획하였다. 2001년 7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이루어진 네 번째 강좌에서는 관심사에 따라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초보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강좌인 ‘인터뷰와 사진으로 보는 NGO, 하승창의 NGO이야기2’와 기획강좌인 프라이버시 강좌 ‘빅 브라더를 막아라’ 그리고 예산강좌인 ‘간간한 납세자가 됩시다’를 운영하였다. 또한 시민단체활동가를 위한 강좌인 양용희의 ‘NGO 마케팅’, ‘온라인을 이용한 시민단체 활동 가이드’ 등으로 강의를 세분하여 편성하였다. 운영의 여건으로 커뮤니티 등의 강의 요소들을 없애고 교과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강의를 구성하였다. 다섯 번째 강좌이후부터는 쟁점토론학습과 사회참여 협동학습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운영하였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이어진 6번째와 2004년도의 7번째 강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lt;표 IV-1&gt; 강좌의 구성

구분	강좌명	강의내용	강사
6번째	1. 민족과 인종으로 본 미국	포카혼타스에서 미스 아메리카까지 - 민족과 인종으로 본 미국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2. 한국정치	지역주의와 대선	유창선(시사평론가)
	3. 기업광고	가면을 벗어라! - 기업광고 제대로 보기	신태중(좋은기업만들기)
	4. 법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도 알아야 한다	최인옥(공익소송센터)
7번째		여성과 군사주의	김엘리
		시민운동 인터뷰	정선애
		WTO는 무엇인가	장하준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NGO의 시민교육이라고 함은 인터넷의 특징을 살려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민주적인 태도를 육성하여 사회참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시민학교의 시민교육은 크게 두 번의 전환점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전환점은 세 번째 강좌(2000년 9월 2001년 3월)로 이 강좌에서부터 교육 대상층을 ‘시민단체 상근자, 회원, 대학생’으로 분명히 하게 되어 교육 내용의 구성이 대상층이 원하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이루어져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환점은 다섯 번째 강좌(2002년 4월 2002년 10월)로 이 강좌에서는 강좌의 내용을 ‘한국의 시민운동, 시민의 권리, 정보사회문화, 세계시민사회’의 4가지 영역으로 정하였다. 이는 강좌의 내용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의의 내용이 알차게 준비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앞선 교육 대상층의 명확화와 교육 내용의 영역 선정은 시민학교의 시민교육이 체계성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했다.



## 2. 교육내용과 강좌구성

첫째, log-in, 강의별 Q&A, 커뮤니티 등이 현재는 없어졌다. (사)인터넷 시민학교」는 현재 log-in 제도를 없애고, 강의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계층이나 학력이나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어느 누구나 강좌에 접근할 수 있어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민교육 강좌보다 시민들에게 열려져 있다. 그러나 log-in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강좌 개설로 인한 수강생들로부터의 수강료 수익이 없어지게 되고, 또한 수강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얻기가 힘들어졌다. 교육컨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다른 곳으로부터의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만 된다면 사실 log-in 제도를 통한 강좌의 유료화는 하지 않는 편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되므로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수익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log-in 제도를 통해서 수강생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강생에 대한 정보라는 것이 단순히 그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아니라 수강생들이 시민학교를 찾게 된 동기와 그들의 교육에 대한 기호나 관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시민학교는 이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기획에 참고할 수도 있고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강좌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log-in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커뮤니티도 네 번째 강좌 이후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시민학교만의 커뮤니티는 없고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전체에서 운영되는 커뮤니티가 있다. 오프라인 모임이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는 면대면(面對面)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므로 글로만 의견을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사)인터넷 시민학교」의 교육실시방법은 다른 NGO(참여사회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의 시민교육과 달리 완전히 온라인만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으로는 오프라인 교육과 달리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수강자가 원하기만 한다면 정해진 기간(강좌개설기간) 이외에도 되풀이해서 학습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학습의욕이 고취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경우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시민학교에서의 교육은 일방적으로 시민학교에서 강의안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것을 수강생들이 읽는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인터넷 시민학교」의 시민교육은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강의안을 인터넷에 올려서 수강생들이 그것을 읽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과 더불어 수강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자료실을 따로 운영하여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뉴스레터를 e-mail로 발송하여 시민사회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터넷 시민학교」의 교육활동은 인터넷의 특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사회참여로 이끄는 데에 약간의 한계를 나타낸다. 기획강좌와 같은 전문성 있는 강의와 강의별 전문적인 강사, 풍부한 자료실의 운영 등 NGO만의 특성을 살린 장점을 가진 반면에 여러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이 미진하고 log-in 제도와 강의별 Q&A, 커뮤니티 등의 부재로 인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인터넷 시민학교」의 시민교육 활동은 한국 NGO의 시민교육 활동에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인터넷을 통한 시민교육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며 또한 오프라인 교육의 대안이나 보조적인 것이 아닌 온라인 교육만의 이점과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여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참여로까지 이끌어 갈 수 있다.

## 제2절 직업훈련 사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NGO가 운영주체가 되어 현재 전국에 51개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 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여성의 고충상담,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시설 운영, 기타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대별된다.

&lt;표 IV-2&gt;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주체

NGO 단체명	운영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서울 강남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인천 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서울 동작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자원금고	서울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중앙회	서울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울산 울산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서울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부산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서울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문태소리교육협의회	부산 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 여성 지도자 연합	경기 성남 여성인력개발센터
전국 주부교실중앙회	서울 용산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서울 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여학사협회	경기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 광진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원	서울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서울 강북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북 구미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 달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경기 시흥 여성인력개발센터

&lt;표 계속&gt;

NGO 단체명	운영센터
한국부인회	서울 마포신촌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 남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북 칠곡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부인회	서울 마포신촌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 남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북 칠곡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한 YWCA연합회후원회	서울 금천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 노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 인천 여성인력개발센터 경기 수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경기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경기 안양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원 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원 춘천 여성인력개발센터 대전 대전 여성인력개발센터 충남 논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충남 천안 여성인력개발센터 충북 청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북 군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북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남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남 목포 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 광주 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 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북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남 김해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남 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남 창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동안 실시한 사업 현황 중 직업훈련분야를 살펴보면, 51,197명이 수료하였고, 18,890명이 취업을 하였다. 수료율은 86.08%이며, 취업률은 36.90%를 나타낸다.

직업훈련 성과를 유료과정과 무료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균 864명이 훈련에 참가하고, 751명이 수료하였으며, 241명이 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이 때, 취업률은 36.94%정도에 이르며, 전일제 비율은 45.96%로 나타났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직업훈련의 경우 센터 당 평균 301명이 훈련에 참가하고, 251명이 수료하였으며, 12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수료자 중 취업률은 56.97%정도에 이른다. 유료과정보다 무료과정이 취업 성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재정현황

### 가. 수입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연간 재정은 크게 보아 국고보조금, 무료훈련과정 훈련비, 수강료 수입으로 구성된다.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 중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 당 평균 수입은 485,831천원이며, 이 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센터 당 평균 145,451천원, 총 수입의 32.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강료 수입과 무료 훈련과정 훈련비인데 수강료 수입은 센터 당 평균 132,779천원으로서 총 재정수입의 27.81%, 무료 훈련과정 훈련비는 87,876천원으로서 총 재정수입의 18.45%를 차지하고 있다. 운영주체의 자체 부담금은 11,655천원, 총 재정수입의 2.65%에 불과하며, 이는 1999년의 10.1%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 재정수입은 최소 206,549천원에서 최대 2,000,602천원까지 센터별로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료훈련과정 훈련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무료 훈련과정 훈련비 수입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센터는 273,111천원에 달한다.

&lt;표 IV-3&gt; 재정 수입 항목별 비중

(단위: 천원(%))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센터수
수입 총액	485,831.62	206,549	2,000,602	51
국고 보조금	145,451.45 (32.08)	102,743 (13.93)	467,743 (55.50)	51
무료 훈련과정 훈련비	87,876.38 (18.45)	0 (.00)	273,111 (37.60)	51
여타 보조금	62,919.82 (13.66)	0 (.00)	474,058 (73.25)	51
자체 부담금	11,655.53 (2.65)	0 (.00)	53,720 (12.00)	51
수강료 수입	132,779.58 (27.81)	20,586 (7.05)	332,389 (52.60)	51
기타 수입	42,605.27 (6.00)	0 (.00)	1,026,614 (47.96)	51

## 나. 과목별 지출

&lt;표 IV-4&gt; 과목별 지출 비중

(단위: 천원(%))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센터수
과목별 지출총액	463,235.52	195,682	1,795,635	51
인건비	125,221.38 (29.55)	59,987 (8.40)	229,258 (46.30)	51
공공요금	10,548.48 (2.60)	3,062 (0.53)	45,184 (15.15)	51
시설관리비	42,640.12 (9.68)	6,000 (1.75)	173,460 (30.00)	51
행정비 등	31,796.16 (7.08)	10,378 (2.30)	110,994 (28.00)	51
훈련비	181,885.16 (40.64)	42,600 (12.11)	433,001 (64.45)	51
자산 취득비	49,221.96 (5.98)	0 (.00)	1,366,252 (72.50)	51
용자·출자금	320.63 (0.07)	0 (.00)	10,068 (2.45)	51
차입금 상환	2,834.96 (0.56)	0 (.00)	26,300 (4.95)	51
기타지출	15,544.56 (3.54)	0 (.00)	139,735 (26.90)	51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과목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지출은 센터 당 평균 463,235천원이며, 최소 195,682천원에서 최대 1,795,635천원에 이른다. 이 중 훈련비는 센터 당 평균 181,885천원으로서, 총 과목별 지출의

40.64%, 인건비는 센터 당 평균 125,221천원으로서, 총 과목별 지출의 29.55%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관리비는 42,640천원으로서 총 과목별 지출의 9.68%를 차지한다. 한편 훈련비는 최소 42,600천원에서 433,001천원, 인건비는 59,987천원에서 229,258천원으로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 다. 사업별 지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별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직업능력개발비가 센터 당 평균 262,450천원으로서 총 사업별 지출의 59.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은 센터 당 평균 19,005천원으로서 총 사업별 지출의 4.47%, 복지후생시설운영비는 22,663천원으로서 총 사업별 지출의 5.71%, 그리고 사회교육은 21,607천원으로서 총 사업별 지출의 5.07%를 차지한다. 이 상과 같이 사업별 지출의 전반적인 내역을 검토하면, 직업능력개발에 투자하는 비용과 사회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의 비중에 비추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변의 다른 유사기관과 차별화하면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5> 사업별 지출 비중

(단위: 천원(%))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센터수
사업별 지출 총액	463,292.41 (100.00)	195,682	1,795,635	51
직업능력 개발비	262,450.84 (59.24)	53,283 (23.40)	690,857 (92.10)	51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19,005.10 (4.47)	0 (.00)	122,285 (21.06)	51
복지후생시설	22,663.39 (5.71)	0 (.00)	78,147 (19.10)	51
사회교육	21,607.78 (5.07)	0 (.00)	135,119 (33.75)	51
공동경비 및 기타	129,397.75 (25.54)	0 (.00)	1,093,458 (74.80)	51

## 2. 인력현황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규직원 수(관장 제외)를 보면 센터 당 평균 6.39명 정도이며, 51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직원 수는 총 326명에 이른다. 그러나 최소 3명에서 11명까지 센터마다 다소 편차가 큰 편이다.

이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낮은 임금으로 인한 빈번한 이직으로 인력관리 상에서 애로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보유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빈번한 이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인상과 전문화된 인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채용 및 지속적인 보수교육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부족한 인력을 시간제 직원을 활용함으로써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회계양식이나 평가양식을 통일하는 것도 이들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관장과 직원에 대하여 리더십, 경영능력 함양,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직업상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직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수 실적을 살펴보면 센터 당 연평균 74.71일 정도의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표 IV-6> 직원활용현황 및 연수

(단위: 명, 일)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합계	센터수
직원수	6.39	3	11	326	51
연수 일수	74.71	6	1,053	3,810	51

주: 직원 수는 관장을 제외한 직원의 수이며, 연수 일수는 관장포함 전 직원이 연수에 참여한 총 일수임.

다음의 표에 의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센터 당 평균 2.14명 정도 직업훈련분야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복지분야에는 센터 당 평균 1.27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관장 및 관리담당과 직업상담/취업알선 분야에는 센터당 평균 1.25명과 1.26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한편, 직업훈련분야에서는 전 센터에 담당하는 인력이 있으나 직업상담/취업알선분야에서는 50개소, 복지



분야에서는 44개소에서 전담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표 IV-7> 직원의 투입 구성현황

(단위: 명)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보유센터수
관장 및 관리담당	1.25	1	3	51
직업훈련분야	2.14	1	3	51
직업상담/취업알선	1.26	1	4	50
복지분야	1.27	0	3	44
기타	1.63	0	4	46

### 제3절 지역교육 사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1. 설립목적 및 현황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성장과 발전, 가정의 성장과 발전, 학교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네 가지 설립목적 가지고 1969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생연구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부모,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민의 자질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자세히 보면, 첫째, 지역주민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배우기를 원하거나 배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발굴,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 모두가 자아실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둘째, 가정의 성

장과 발전을 위해 부모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녀지도의 기술과 방법을 익히며, 가족구성원간의 효과적인 인간관계 형성은 물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셋째,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학교가 지역주민 모두의 학교임을 인식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며,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협력에 의하여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고, 만남의 기회를 통해 이웃을 넓히고, 새 이웃을 만들어 감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고 있다.

현재 중앙협의회를 제외한 26개 지역에서 지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수는 지역사회학교 1,266개교(학교회원 20만명 활동)를 비롯해 개인회원 8,827명(일반회원 1,118명, 클럽회원 3,216명, 평생회원 2,718명, 프로그램회원 68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113개 클럽을 산하클럽으로 두고 있다. 직원 수는 중앙협의회에 15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협의회에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직구성은 회장을 중심으로 총회와 이사회가 존재하고 사무국장 아래 부모교육 사업팀, 프로그램 사업팀, 외부협력 사업팀, 서울활동 사업팀, 홍보출판 사업팀, 총무과, 관리과가 존재하며, 25개의 지역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부모교육 사업팀에는 부모교육위원회 산하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연구회에는 교육관연구회, 대화법연구회, 학습습기연구회, 진로지도 연구회, 성&양성평등 연구회, EQ개발연구회, TA연구회, 7Habits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7개의 분과협의회인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홍보위원회, 서울활동위원회, 부모교육위원회, 프로그램개발위원회, 학교도서관 가꾸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시기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 1968년 여름 동아일보사와 주한 미국공보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국제세미나 자료 가운데 ‘To Touch A Child’라는 미국의 지역사회학교를 소개하는 영화가 있었다. 이 영화는 한 사회에 방치된 교육의 문제점과 욕구를 찾아내고,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던 많은 사람들의 지도력을 규합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밝고 희망차게 가꾸어 간다는 내용으로 이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을 나누었던 언론인, 기업인,

학자, 민간단체 지도자들은 이 운동이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며 우리의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에 뜻을 함께 하여 1968년부터 여러 차례의 준비과정을 거쳐 1969년 1월 24일에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를 발족하였다. 창립 3개월 후 지역사회학교로 제일 먼저 서울 재동초등학교(1969년 4월 23일)가 굳게 닫혔던 교문을 활짝 열어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게 되었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을 보살피 주었으며, 교실 하나가 지역사회교실로 꾸며지고, 어머니들의 교양, 취미 활동의 보급자리로 바뀌었다. 후원회의 초창기 중점사업으로 순회강연을 통해 이념을 보급하는 한편 지역사회학교운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학교운동의 이념정립과 방향을 모색하였고, 또 홍보용 회보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사회교육단체를 탄생시킨 획기적인 해가 되었다.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는 1970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학교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권장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학교운동의 이념을 널리 보급하고, 회원의식을 심어주는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 운동은 지방으로도 점차 확대되어 나갔고, 지역사회학교운동의 커다란 발판을 이루어 나갔다. 1973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울산에서 지역사회학교운동세미나가 개최되었고, 몇 차례의 발족과정을 거쳐 울산지역사회학교후원회를 탄생시켰다. 조직이 확대되고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프로그램, 확장, 청년, 교본출판 특별위원회 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이 중심이 되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각 분야의 지도자 요청이 크게 늘어, 청년자원 지도자, 성인자원지도자, 지역사회학교운영지도자들을 다양한 지도자교육을 통해 양성하였다. 또한 지역사회학교운동에 관한 문헌 및 프로그램 운영과 실시에 관한 자료, 월간 새이웃을 제작·공급하여 현장에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재동지역사회학교가 발족된 이래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 동참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각기 다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갔고, 어린이들을 위한 매미학교, 흰눈학교, 청소년을 위한 직업, 기술교육, 야간학교, 지역주민과 회원들을 위한 취미여가 활동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그리고 분야

별 취미와 특기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은 소그룹을 조직하여 지역사회학교 명예교사,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해 나갔고, 청년자원봉사자로 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대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인 수련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1971년 최초로 한빛 젊은 새이웃을 발족시켰고, 이를 시작으로 12개 젊은 새이웃이 발족되어 보다 조직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이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나갔다.

1979년 1월 24일에는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그해 12월 4일에는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1979년도 사회교육 유공자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사회교육단체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였으며, 지역사회학교 회장 협의회를 마련하여 월 1회 모임을 갖고 상호정보교환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여 각 협의회 회장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갔다.

지역협의회로서는 최초로 1980년 경상북도협의회가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12개 시도(市道)협의회가 결성되어 전국적인 조직의 기틀이 갖추어졌고, 1984년 3개년 발전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1985년에 지역사회학교운동 15주년 평가가 이루어져 운동의 방향을 보다 구체화 시켜 나갔다, 특히 사회교육심포지엄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교육의 개념과 방법을 정립해 나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켜 나가면서 '나'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우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 나갔다. 특히 이 시기는 지역사회학교운동에 참여하는 학교의 수가 급속히 증가되어 지역사회와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학교의 적극적 기능이 발휘된 시기로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1988년 이사위원모임을 통해 지역사회학교운동의 방향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자기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지역사회 교육환경개선, 부모역할교육, 유익한 노후생활교육, 건실한 청소년의 성장지도라는 6대 중점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전개해 나갔다. 특히 1988-1989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역사회교육지도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일환으로 1988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을 설립하여 본회의 활동과 사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갔다. 1989년 지역사회학교운동 20주년을 맞이해 이제까지 학교만을 중심으로 전개해 왔던 운동을 한 걸음

진전시켜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후원회 명칭을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로 개칭함으로써 변혁의 서막을 열었다.

1990년에는 지역사회교육운동 20년사가 발간됨으로써 운동의 방향 정립과 경험의 축적을 이루었고, 협의회 활동의 정체성이 명확히 확립됨으로써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특히 1995년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역사회교육회관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완공되어 협의회 역량을 보다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1996년에 8개 도단위 지역협의회를 20개 시단위 지역협의회로 개편되었고, 협의회 자립계획이 수립돼 전국 지역협의회는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갔다. 이는 새로운 지역으로부터 협의회 발족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져 1999년 성남, 부천, 안양, 여수, 고양, 경남중부협의회가 창립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부모교육사업, 소그룹육성사업을 본회의 3대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갔다. 특히 학교 중심의 평생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캠페인 및 워크숍, 지역사회교실 갖기 운동 및 학교도서관 가꾸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은 물론 프로그램 지도자를 육성, 배출하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사업을 펼쳐 나갔다. 부모교육 사업으로 학자와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부모교육전문 프로그램 7종을 개발하였고, 부모교육강사를 양성하여 이를 적극 보급해 나갔다. 4종의 부모교육 단행본을 비롯해 1992년부터 부모에게 약이 되는 이야기 소책자를 격월로 꾸준히 발행하였으며, 부모교육 공개강좌, 좋은 부모대회, 부모학교를 활발하게 전개해 참가자 수만 해도 한해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1995년 지역사회학교를 통해 성장한 전문성과 자원활동 의지를 가진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분야별 취미별로 97개 소그룹이 결성되었고, 이들 소그룹 가운데 주부중심의 77개 소그룹이 연합해 1996년 11월 1일 주부전문인클럽을 탄생시켰다. '행복을 만들어 가는 주부들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연합체는 매년 11월 1일을 주부의 날로 정해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가는 주부로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문성을 연마하여 우리 사회 발전에 적극 공헌하는 주부전문인으로서 활동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1997년 새이웃 300호를 기념해 특집호가 발간되었고, 그간 발간된 자

료들을 정보화 구축사업에 따라 데이터 뱅크화 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정보 네트워크를 이루었다.

## 2. 교육내용과 강좌구성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주요사업은 여덟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지역사회교육의 이념보급 및 지역사회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둘째, 지역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프로그램 강사를 양성하며, 셋째, 지역사회학교의 확산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넷째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의식개혁 연구와 다섯째, 학교내 평생교육활동지원, 방과 후 활동지원, 학교 돕기 사업,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 등 좋은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고, 여섯째,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및 청소년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별 학습소그룹 및 문제해결 소그룹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교원연수기관으로서 일반연수와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교육 활동 지원사업으로 학교도서관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와 협력, 학부모 사서도우미 교육 등을 통해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이 정보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주력하며, 인터넷을 통한 부모교육의 보급과 가족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책자를 만들어 제공하며, 청소년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부모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지도자 육성 및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통해서도 청소년을 잘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강사자원을 양성하여 지역사회봉사와 발전에 참여하도록 하여 부모교육, 예절, 진로지도, 상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을 위해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모임을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폭을 넓히고, 전문화

를 추구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과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프로그램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평생교육 심포지엄 실시를 통해 평생교육의 주요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교장, 교사, 어머니회 임원 및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교육 운영지도자를 교육 및 육성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별로 학습동아리를 육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사자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예절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절다도교육관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전통 및 현대생활 예절을 익히게 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국지역사회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은 기관지인 ‘새 이웃’을 통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각종 사업들을 지역사회 공공 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각종 기관에서 위탁받은 사업으로는 2001~2003년 동안 경기도 청오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여성 학습동아리를 육성하는 ‘경기도 여성학습동아리 육성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용인시청의 위탁으로 성인 예절교육, 청소년·아동예절교육, 예절지도자를 양성하는 ‘용인시예절교육관 교육운영’을 8천4백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안양시청의 위탁으로 6천8백만 원의 예산으로 ‘안양시 예절교육관 교육운영’을 실시했다.

이외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여성부의 지원 아래 양성평등문화를 창조하는 부모교육인 ‘평등가정 성공가이드’, ‘열린 부모, 신나는 아이들, 행복한 가정’을 2천3백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였다. 또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워크숍 및 자녀대상 심성훈련인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클리닉 & 캠퍼 루교실’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으로부터 1천 2백만 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했다.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진 부모들의 모임인 ‘좋은 부모대회’를 문화관광부로부터 5백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사서도우미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모형을 제공하여 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활성화’를 위한 사서도우미전문교육’을 교육인

적자원부로부터 3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였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전반적으로 여성, 자원봉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주부이자 학부모인 여성을 대상으로 글쓰기, 독서, 예절교육, 부모교육 강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부모교육 강사육성 프로그램의 경우 초기에는 시민교육 의식 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부모교육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강사를 양성하게 됨에 따라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변모·발전하게 되었다. 부모교육 강사육성 프로그램의 경우 주 2회 6시간의 교육을 1년간 지속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수강료는 200만원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료 이후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부모교육 강사에 대한 재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글쓰기지도, 독서지도, 예절교육지도 과정의 경우 주 1회 2~3시간의 교육을 9~12개월 동안 받게 되며 수강료는 50~70만원 선에 이른다.

### 3. 재정현황

2003년도 한국지역사회교육협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현대지원금, 회비수입과 회관운영수입, 법인세 환급, 이자수입, 사업수입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사업수입은 기획 및 지역육성사업과 서울활동사업, 부모교육사업, 회관프로그램사업, 프로그램사업협력사업과 회원홍보사업으로 구성된다. 2003년 수입 내역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t;표 IV-8&gt; 재정수입 항목별 비중

항	목	예산액	집행액	비율
저년도 이월금		107,200,840	107,200,840	
현대지원금		100,000,000	100,000,000	100%
회비수입	소계	130,000,000	103,111,380	79%
	평생회원	60,000,000	63,560,000	106%
	CMS회원	70,000,000	39,551,380	57%
회관운영수입		232,888,000	215,448,843	93%
법인세 환급		1,500,000	1,530,810	102%
이자수입	소계	40,000,000	55,906,770	140%
	기금이자	30,000,000	39,475,349	132%
	잡수입	10,000,000	16,431,421	164%
사업수입	소계	857,750,000	924,798,650	108%
	기획 및 지역육성사업	31,000,000	43,600,248	141%
	서울활동사업	38,950,000	40,420,096	104%
	부모교육사업	221,400,000	248,013,500	112%
	회관프로그램사업	156,200,000	157,513,300	101%
	프로그램협력사업	377,200,000	400,896,406	106%
	회원홍보사업	33,000,000	34,355,100	104%
수입합계		1,469,338,840	1,507,997,293	103%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기획 및 지역육성사업과 서울활동사업, 부모교육사업, 회관프로그램사업, 프로그램협력사업 그리고 회원홍보사업이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며 경상비로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그리고 회관운영비가 각각 지출되었다.

&lt;표 IV-9&gt; 재정지출 항목별 비중

항	목	예산액	집행액	비율
사업비		762,520,000	801,778,957	105%
	기획 및 지역육성사업	117,900,000	122,659,945	104%
	서울활동사업	37,810,000	33,574,185	89%
	부모교육사업	15,980,000	157,240,490	100%
	회관프로그램사업	85,030,000	87,629,420	103%
	프로그램협력사업	312,540,000	331,253,007	106%
	회원홍보사업	52,260,000	69,421,910	133%
경상비	소계	503,600,000	474,929,910	94%
	인건비	260,000,000	258,126,830	99%
	일반관리비	72,000,000	69,562,780	97%
	회관운영비	171,600,000	147,240,300	86%
기금적립금		100,000,000	100,000,000	100%
예비비		103,218,840		
총계		1,469,338,840	1,376,708,867	94%
이월금			131,288,426	

## 제4절 농업교육 사례: 한국유기농업협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농림부에 등록된 (사)한국유기농업협회는 1978년 7월 창립 당시 상근 직원 1명, 회원 230명으로 출발하여 2004년 현재 산하 회원 단체 235개에 전체 회원은 30,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가락동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는 현재는 상근직원 8명과 비상근 직원 5명이 일하고 있다. 8명의 상근직원은 주로 공채를 통해 선발되었으며, 30대 4명, 40대 5명, 50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6명이 대졸이며 2명이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상근직원의 연간 총 임금은 최저 1,800만

원에서 4,000만원 수준이다. 이 단체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하였으며, 퇴직금도 지급되고 있었다.

2003년 기준으로 총 예산규모는 4억 8천만원 정도가 되며 지출도 동일하게 4억 8천만원이며, 이중 약 절반인 2억3천만원은 사업수익을 통해 얻으며 기부금을 통해 1억5천만원을 조달하고 있다. 연회원 수입과 정부 지원금은 각각 5천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단체가 생각하는 NGO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지원방법은 NGO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사무실 제공 등의 방식을 선호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수시감사 등의 지나친 간섭을 우려했다. 전체 지출금 4억 8천만원 중에서 교육훈련사업과 관련해서 9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 직원교육 및 연수비용은 연 1백만원으로 매우 낮게 지출되고 있었다.

"우리는 자연보호와 환경개선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온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새 농법을 연구개발하고 소비자들을 계몽하고자 이에 한국유기농업협회를 발족시키고 그 취지를 밝힌다."는 창립 취지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주 사업은 농민을 대상으로 유기농관련 기술/직업교육사업 및 홍보 캠페인이다. 1년 평균 30차례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408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평균 24시간 진행되며, 70여명 참석에 교육비는 교육생 1인당 7만원이다. 전체 교육중 1/2은 정부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교육생이 100% 부담을 해야 한다. 교육훈련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교육훈련 프로그램 담당 상근 직원이 2명 있으며 이들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다. 교육훈련 후 매년 만족도나 요구조사를 실시했으며, 강사는 주로 연고자의 소개로 충원하였으며, 강사료는 시간당 100,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다양한 교육 경험에도 불구하고 농민대상 교육시 교육훈련 장소가 부족하고 참가한 농민들의 유기농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족은 교육 진행시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으며, 상근직원교육시에는 예산과 프로그램 내용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한국유기농업협회는 향후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관련 기술교

육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기농업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이상으로 4가지 유형의 NGO의 교육훈련 사례를 살펴 보았다. 첫 번째 ‘인터넷 시민학교’는 인터넷을 통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대상층을 명확히 선정하여 교육대상층이 원하는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정부가 시설 임차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여성의 교육훈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교육훈련의 성과도 센터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임차보다는 자가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세 번째,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교육 강사육성 프로그램의 경우 최초에는 시민교육 차원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강사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단체의 재정수입도 증가하고 있었다. 네 번째, 한국유기농업협회의 경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교육훈련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경우 시설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 제5장 NGO의 교육훈련사업 강화를 위한 과제

앞서 NGO의 교육훈련사업 및 종사자의 직무능력개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NGO 운영의 어려움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2003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NGO의 총 예산규모는 평균 3억 6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이 약 1억, 사업수익이 8천 4백만원, 기부금이 7천만원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연회원 수입이 6천 5백만원 선으로 나타나고 있어 NGO의 예산규모에서 정부 지원금이 가장 큰 수입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운영이 더욱 나빠질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NGO에 대한 전체 사회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NGO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와 대학을 비롯한 여타 사회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NGO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보다 다양하게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NGO의 경우 교육훈련전문가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상근직원의 수가 평균 11명이었으나 교육훈련 전담자가 있다는 응답이 65% 내외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강사채용도 대부분 연고자에 의한 섭외가 다수여서 능력있는 강사 채용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구조였다.

셋째,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역시 전반적으로 예산 부

족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땅한 교육훈련 장소의 부족, 교육훈련장비의 부족, 참가대상자의 부족, 프로그램의 강사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교육훈련사업 실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NGO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실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NGO의 일반적인 채용방식은 내부 추천제에서 공개채용으로 변화되고 있다. NGO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전에 자신의 경험이나 훈련이 전무한 경우를 대비해서 단체에서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근직원의 교육훈련은 단체의 발전을 위한 능력과 잠재성을 키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NGO의 교육훈련 사업 강화를 위한 과제를 NGO 내부에서의 과제와 사회적 차원의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절 NGO 내부의 과제

무엇보다 NGO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민교육 분야를 보면 사회와 국가, 세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민주적인 태도의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NGO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 NGO가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교육에 대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동안 우리 나라의 NGO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힘입어 쟁점 발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외국의 NGO들과 같이 시민사회의 주요한 문제인 실업예방이나 경제활동의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분야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NGO들의 교육훈련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교육훈련의 기본 구성 요소인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의 확보와 함께, 관련 기관간의 연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먼웨어로서는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훈련전문가와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려는 학습자의 확보가 중요하며, 소프트웨어로서는 다른 교육시설과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되며, 하드웨어로서는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과 교육훈련의 시설, 설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교육훈련시설과의 긴밀한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 1. 교육훈련전문가 및 학습자 확보

NGO의 교육훈련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전문화된 교육훈련전문가의 확보와 함께 틈새 교육훈련 대상자 발굴이 중요하다. 교육훈련전문가와 학습자의 확보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NGO영역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훈련 전공자들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전공자들이 많다. 여기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사회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이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소홀히 다루어왔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현재 NGO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훈련에 대한 지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만약, NGO가 교육훈련을 단순히 부족한 단체 운영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학습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훈련의 잠재집단을 발굴하고, 그들의 교육훈련 요구를 조사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주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계획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문 교

육훈련가의 확보와 함께, 개발된 프로그램의 전문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경험시킬 수 있는 교·강사의 확보가 관건인 것이다.

NGO의 교육훈련사업의 활성화는 교육훈련대상 집단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다른 여타의 교육훈련시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NGO의 교육훈련사업은 설립,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돈벌이’나 ‘사교의 장 제공’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학습에 대한 본능적 욕구 충족을 통해 시민공동체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비중 있게 요구되는 공동체 정신 함양이 NGO 교육훈련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는 점도 틈새 교육훈련 대상자를 확보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유관기관간의 연계 강화

NGO가 운영할 교육훈련사업은 관련 있는 시설이나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가 구축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재정적 또는 시설 여건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NGO 시설이나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연계를 통하여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본래의 교육훈련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NGO 외부의 지원

우선, NGO가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지원해 줄 만한 법률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NGO를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 때 가장 우선 시해야 할 것은 국가에 의한 지원을 받더라도 NGO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NGO의 교육이 국가에 의해 좌우되거나



일방적으로 이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NGO의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과 더불어 전담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는 독립된 전담 기구(연방정치교육원)를 두어 시민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NGO 관련 정책동향과 법령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내용<sup>6)</sup>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회교육 활동이 활성화되자 이들의 교육활동을 거의 법의 테두리 밖에 방치해 두었던 이제까지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가의 평생학습 관리체제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개정한 「평생교육법」에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조항을 따로 두어, 다른 사회교육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학습관리체제 안에 시민사회단체의 사회교육을 포함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교육 활동을 위해 어떤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면 「학원의설립과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한 시설 및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아니면 「공익법인에관한법률」에 의거 재단법인이나 사단 법인을 설립해야만 합법적으로 안정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 그 인가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체계적인 사회교육시설을 설립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임의단체 형식으로 일시적인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가 많다.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타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인 평생교육법은 8가지 평생교육시설중의 하나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정하고, 국가의 학습관리체제 안에 시민사회단체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첫째,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sup>7)</sup>고 하면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수가

6) 이 부분은 김민호(2001a; 2001b)의 논의를 많이 참조하였다.

300명이상인 시민사회단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령은 시민사회 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질 관리,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나치게 영세한 평생교육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회원수를 300명으로 정한 것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조처이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중 회원수가 300명이상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자발성과 결사의 자유를 바탕으로 형성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반 시민대상의 사회교육 활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회원수 기준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둘째, 신고의 의무, 절차 및 조건이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반드시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동법 제32조 제1항의 2에 의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이 제시한 여타 영리성의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비영리성,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법을 통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태만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 평생학습 관리체제를 맡고 있는 국가의 권한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의무화에 한정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영리성의 평생교육시설에 한정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또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려면 학습시설, 자료실, 관리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일정한 시설·설비기준을 갖추고 그 위치는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또 명칭, 목적, 위치, 운영규칙, 경비와 유지방법(학습비 포함), 시설·설비 명세, 개강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설치계획서와 함께,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그 이력서와 설립재산에 관한 증빙서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재산목록·등기부등본 및 설립재산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체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시민대상의 교육을 위해 다른 곳의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가 시민

사회단체의 사회교육을 활성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교육기간 동안 다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를 갖춘 시민사회단체만을 인가할 뿐 작은 규모의 시민사회단체의 사회교육 활동은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자격이다. 평생교육법은 모든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긴 하다. 그러나 재정적 안정을 갖추지 못한 시민사회단체들로서는 재정 형편상 자비 부담으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 곤란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마치 인턴제도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비영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평생교육단체나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파견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 보조이다. 「평생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경비 보조의 대상, 경비 보조 방식 등이 언급돼 있지 않아 경비보조가 선연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비 보조 내용에는 비영리 평생교육단체나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경비 보조 대상의 선정은 평생교육단체나 시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 지원하되, 평생교육단체와 시설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생교육지원 선정위원회가 결정한다. 적어도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후원금이나 자체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고, 전기·수도·전화·전송·우편·컴퓨터 통신 등의 공공요금을 일정 부분 할인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삽입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에서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통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업 단위(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민간비영리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는 자활사업에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민간 부문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의 일부도 NGO에 지원되고 있으며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SUMMARY

The status of and the issues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d by NGOs

Eui-kyoo Lee Hye-won Ko

Recently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has grown important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ducation and train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Despite several legal improvements and increased social concern, support from the government has been weak and only a few systematic studies about the actual condition of NGO-provided education and training are available. NGOs have provided various social services and thus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actual conditions of NGOs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both their employees and members, which can set the groundwork for the realization of a comprehensive learning society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learning network. It is essential for our society to participate in NGO's education training programs to achieve a civic society of network learning where citizens play a key role in criticizing freely over public issues and actively taking part in society.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NGO'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make suggestions to help improve the performance of NGO's programs.

In particular, the first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NGO'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 intended for the general public and NGO workers who serv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 And the second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would increase the probability of realizing a comprehensive learning society. This report surveyed general civic groups provid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 except employer and labor groups.

This report sampled 290 groups offer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 using the 「Directory of Korean NGOs 2003」 which contains about 10,000 groups. Of the groups selected, as many as 116 groups belonged to the civil society sector and 71 groups were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The majority number of NGOs offer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 were concentrated in the Seoul, Kyunggi and Jeollabukdo areas and in that order. Of those, 140 groups offered such programs.

This report surveyed 290 civic groups from the 「Directory of Korean NGOs 2003」 and 355 affiliated groups of Solidarity network, during from July to August in 2004. The total number of groups surveyed is 77 groups, including 36(46.8%) groups belonging to the civil society sector, 22(28.6%) groups in the social service field, 10(13.0%) groups in the field of labor, farming and fishery, 5(6.5%) groups in the education and academic field, 2(2.6%) environmental protection groups, and 1(1.3%) group for each culture and media, and religion sector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n this report, agricultural training programs offered to the public accounted for 29.3%, volunteer training programs accounted for 13.8%, sex education for the youth accounted for 10.0%, children's education programs stood at 5.5%, women education programs constituted 5.3%, and counsellor training programs accounted for 2.8%. The programs fund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cluded agricultural training(36.8%), volunteer training(36.8%), sex education for young people(11.8%), women education(4.2%), professional career training(3.5%), and leadership education(3.5%).

Most groups surveyed pointed out that insufficient funding is the most serious problem in providing programs. And the majority of groups survey customer satisfaction after the completion of programs and more than 60 percent of the groups surveyed have full-time employers in charge of education. It is expected that more than 73 percent of groups will have human resources education programs.

Under the peculiar political circumstances, Korean NGOs have not fully tried to design programs addressing unemployment issues and economic activities. There are some major issues being confronted and the most important one to resolve is to secure basic components, including humanware, software and hardware, and to establish the networks between institutions.

In terms of humanware, each civil group needs to secure training experts and active learners. As for software, each group must have specialized programs and management. As for hardware, each group should be equipped with educational facilities and have sufficient funds. Moreover there must be a close network system connecting different groups.

In conclusion,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training programs provided by NGOs, there must be an institutional system, such as a legislative framework, which does not violate the independency and autonomy of NGOs. Besides, each NGO must secure program managers who can train learners by using materials and human resources, and should create a closely-working network system.

## <부 록>

<부록 1> NGO 교육훈련사업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NGO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부록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부록 1> NGO 교육훈련사업 실태조사 설문지

**NGO 교육훈련사업 실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정부출연연구소로서 현재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훈련사업은 '취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직무능력개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인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나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직무능력개발을 귀 단체에서 실시하신다면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조사의 결과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리오니 솔직하게 빠짐없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혹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이의규, 고혜원, 최효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 강남구 청담2동 15-1  
02) 3485-5055, 5094

리서치 대행기관  
엠비존씨엔씨 박효준  
서울강남구 삼성동 159-1  
02) 6000-6230



I. 단체 개관

단체명	한글명		약칭	
	영문명		약칭	
대표	성명: (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써주십시오.	실무책임자(사무국장 등)	성명: ( )	
			핸드폰: ( )	
설립일	____년____월	회원수	( )명	
		회원단체수	* 연합회, 협의회 중앙단체인 경우만 ( )단체	
주소	(우편번호)			
전화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 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 여부: 1) 예 2) 아니오

\* 법인격 여부: 1) 사단 법인 2) 재단 법인 3) 기타(\_\_\_\_\_)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 단체 여부:

1) 등록 단체 (등록기관: \_\_\_\_\_)

(예: 행정자치부, 서울시 교육청 등)

2) 비등록 단체

1. 귀 단체가 주력하고 있는 활동부문은 어떤 것입니까? (정관의 목적에 따라 활동분야)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어 “소분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활동 부문:\_\_\_\_\_)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문화언론	13. 문화예술	사회일반	1. 시민사회일반
	14. 언론출판		2. 여성
노동·농어민·빈민·주거권	15. 노동		3. 청년·학생
	16. 농어민		4. 법·행정·정치
자치·분권	17. 자치와 분권		5. 인권·추모사업회
			6. 평화·통일·민족
경제 및 국제	18. 과학기술·정보통신		7. 소비자·생활
	19. 경제일반	사회서비스	8. 사회복지
	20. 국제		9. 건강·보건의료
환경	21. 환경	교육·학술	10. 자원봉사·구호
종교	22. 종교		11. 교육
			12. 학회

2. 조직규모

창립 당시 회원: (총 \_\_\_\_\_명), 상근직원: (총 \_\_\_\_\_명)  
2004년 7월 회원: (총 \_\_\_\_\_명), 상근직원: (총 \_\_\_\_\_명),  
반상근직원 (총 \_\_\_\_\_명)

2-1. 상근직원의 인적자원분포를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연령 1) 20대 이하: \_\_\_\_\_명 2) 30대: \_\_\_\_\_명  
3) 40대: \_\_\_\_\_명 4) 50대 이상: \_\_\_\_\_명
- 학력 1) 고졸 이하: \_\_\_\_\_명 2) 전문대졸: \_\_\_\_\_명  
3) 대졸: \_\_\_\_\_명 4) 대학원졸 이상: \_\_\_\_\_명
- 근속년수 1) 1년 미만: \_\_\_\_\_명 2) 2년~3년: \_\_\_\_\_명  
3) 3년~5년: \_\_\_\_\_명 4) 5년 이상: \_\_\_\_\_명

2-2. 상근직원의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1) 전문가 소개 2) 자원 3) 공채 4) 해당 NGO 직접 권유
- 5) 회원소개나 권유 6) 기타 (기록: \_\_\_\_\_)

2-3. 상근직원의 연간 총 임금(각종 수당 및 보너스 포함)

최저 (\_\_\_\_\_원) ~ 최고 (\_\_\_\_\_원)

3. 단체형태 1) 독립체 2) 지부 (국제, 국내) 3) 연맹 (국제, 국내)

4. 연간(2003년 기준) 총 예산규모: \_\_\_\_\_원

- 연회원 수입: \_\_\_\_\_원
- 정부 지원금: \_\_\_\_\_원 (중앙정부 \_\_\_\_\_%, 지자체 \_\_\_\_\_%)
- 사업 수익: \_\_\_\_\_원 - 기부금: \_\_\_\_\_원

5. 연간(2003년 기준) 총 지출규모: \_\_\_\_\_ 원

- 교육 훈련 사업 관련: \_\_\_\_\_ 원

- 자체 직원 교육 및 연수: \_\_\_\_\_ 원

6. 귀 단체의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 3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1) 시민교육
  - 2) 직업교육
  - 3) 홍보, 캠페인
  - 4) 조사, 연구, 출판
  - 5) 연대활동(국제, 시민단체, 주민 등)
  - 6) 자원봉사활동(지역사회, 재해지역 등)
  - 7)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급식, 탁아, 이미용 등)
  - 8) 상담활동
  - 9) 대정부 정책건의
  - 10) 감시활동
  - 11) 공동체생활
  - 12) 비영리사업
  - 13) 친목, 상호부조 활동
  - 14) 기타
- (: \_\_\_\_\_)

7. 귀 단체는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8. 귀 단체가 생각하는 NGO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정지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 1) 예산상의 지원 (경상비/인건비/사업비등)

- 2) 인력 지원
- 3) 사무실 제공
- 4) 세제상의 혜택
- 5) 기타(\_\_\_\_\_)

9. 위에서 답하신 재정지원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_\_\_\_\_

\_\_\_\_\_

10.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할 때의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부의 지나친 간섭(수시 감사 등)
- 2) 비탄력적인 예산운용 방식
- 3) 본연의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
- 4) 기타

(기록:\_\_\_\_\_)

11. 귀 단체가 최근(2001년 ~ 현재) 일반인 및 회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적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십시오.





- 7) 프로그램 내용준비    8) 단체 내 관심 결여
- 9) 참석자 기초지식 결여
- 10) 기타(\_\_\_\_\_)

16.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나 요구조사를 실시하십니까?

- 1) 매번 한다                      2) 가끔 한다                      3) 한 적 없다

17. 귀 단체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담당 상근직원이 있습니까?

- 1) 있다(\_\_\_\_\_명)                      2) 없다

18. 귀 단체의 새로운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누가 개발하십니까?

- 1) 자체 개발
- 2) 전문가(단체)에 의뢰
- 3) 지역내 NGO와 공동 개발
- 4) 타지역 NGO와 공동 개발
- 5) 지역내에서 인기를 끈 타 기관의 프로그램을 모방
- 6) 기타(\_\_\_\_\_)

19.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료는?

최저 ( \_\_\_\_\_ 원) ~ 최고 ( \_\_\_\_\_ 원).  
평균 ( \_\_\_\_\_ 원)

20.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강사를 충원하는 방식은?

- 1) 연고자의 소개                      2) 공개 채용
- 3) 다른 NGO의 도움
- 4) 기타 ( \_\_\_\_\_ )





## 24. 최근(2001년 ~ 현재) 직원 및 NGO 활동가의 연간 교육훈련 및 연수

	연도	연수과정명	시행기관	참여기간	시간	참여인원수(명)	단체지원비용(원)	고용보험지원여부(받음, 안받음)	비상근활동가의동시교육여부(받음, 안받음)
(예시)	2001	리더십강화	YMC A	6.1~15	40	1	300,000	받음	안받음
1									
2									
3									
4									
5									
6									
7									
8									

## 25. 이직 인원

- 2001년: 전체 \_\_\_\_\_ 명(남: \_\_\_\_\_ 여: \_\_\_\_\_)
- 2002년: 전체 \_\_\_\_\_ 명(남: \_\_\_\_\_ 여: \_\_\_\_\_)
- 2003년: 전체 \_\_\_\_\_ 명(남: \_\_\_\_\_ 여: \_\_\_\_\_)

## 26. 신입 직원

- 2001년: 전체 \_\_\_\_\_ 명(남: \_\_\_\_\_ 여: \_\_\_\_\_)
- 2002년: 전체 \_\_\_\_\_ 명(남: \_\_\_\_\_ 여: \_\_\_\_\_)
- 2003년: 전체 \_\_\_\_\_ 명(남: \_\_\_\_\_ 여: \_\_\_\_\_)

\* 긴 시간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NGO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1) 경희대 NGO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교육·연구를 통해 시민사회(NGO)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공존·공영을 지향하는 인류공동체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학자와 NGO 지도자, 각계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팀 티칭(team teaching)을 장려하고,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한다.

석사학위 교과과정은 공통필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필수과목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강하는 과목으로, 시민사회와 NGO활동의 철학적·이론적·방법론적 기초를 탐구한다. 전공필수-과목은 전공 분야의 구체적 분석에 필요한 학문적 논의를 소개하고, 각 분야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주제와 이슈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제공한다.

<표> 교과과정

전공	시민사회 전공	글로벌 거버넌스 전공	NGO정책·관리 전공
공통필수	인류사회와 현대문명, NGO와 시민사회, 사회과학방법론, 사회조사방법론		
전공필수	국가와 시민사회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사회정의론 포월(包越)의 정치기획	국지체제와 세계시민사회 NGO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간과 시장의 미래 NGO와 국제기구	집단행동과 공공선 NGO와 정부관계 NGO 경영전략 기업과 시민사회
선택과목	공공성과 시민사회, 글로벌 어젠다 세미나, 민주주의의 역사와 미래, 비교시민사회론, 비영리 마케팅, 비영리 재정관리, 사회복지와 시민사회, 사회주의 체제와 시민사회, 세계시민론, 세계화의 정치경제, 시민사회와 정치참여, 언론과 시민운동, 자원봉사관리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전략적 의사결정과 리더십, 정보화와 시민사회, 주요 NGO사례 특강, 중재와 협상, 탈현대문화와 대안사회, 페미니즘과 성차, 한국시민사회론, 현대사회와 사회운동, 현대성의 윤리, NGO와 국제평화, NGO와 문화적 다원주의, NGO와 미래공동체, NGO와 사회적 자본, NGO와 인권, NGO 조직행동, NGO와 지방자치, NGO와 지속가능한 개발, NGO와 환경		

## 2) 성공회대 NGO 대학원

전체 4학기제로서 1학기동안 해외 NGO 연수 기관의 연수를 권장하고, 국내 시민사회단체활동의 국제화를 위하여 해외 NGO 및 관련 대학연구기관에서의 인턴 혹은 연구원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학과 시민사회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한겨레신문사 문화센터’, ‘성공회대학교 아시아 NGO 정보센터’, ‘성공회대학교 민주사회교육원’, ‘시민의 신문’과 연계하여, ‘시민사회 리더십 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 중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lt;표&gt; 교과과정

과목구분	이수구분	교과목	
전공공통 과목	필수	사회운동과 사회이론, 세계와 NGO, 논문연구 I, II	
전공심화 과목	일반선택	시민사회운동론	사회운동의 이론과 실제, 지역사회와 주민운동, 한국사회운동, 정보화사회와 NGO의
		국제 NGO	국제 NGO연구, 국제기구론, 아시아와 사회운동의
		정책과 NGO	NGO정책과정론, 비교사회정책 외
		경제	현대자본주의론, 대안경제체제론 외
		NGO실무	인터넷과 사회운동,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NGO/NPO경영론, 법과 사회운동, NGO실무영역 I, II, NGO실무론 외
		기타	NGO특강, 해외NGO연수 외
	인권	인권과 사회, 국제인권법, 국제인권사 외	
	평화	평화의 이론과 실제, 현대평화이론, 분쟁과 갈등 해결 사례연구 외	
	환경	현대 환경이론, 환경 법제와 정책, 지구촌 환경문제와 운동, 생태주의 외	
	여성	현대 페미니즘론, 여성법제와 정책, 한국여성사와 여성운동 외	
	노동	자본주의와 노동과정, 국가와 노동정책, 세계화와 노동운동 외	
개발	지구적 빈곤과 NGO 외		

<부록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0.1.12 법률 제611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 (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 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 (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附則 <제6118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정 2000.04.17 (대통령령 제16783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제3조 (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그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 제4조 (등록의 말소)

①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 제6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 (위원회의 운영)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 ④위원회의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8조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 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 (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방법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사업평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지원 및 협력)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로 정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6783호, 2000.4.17>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 사업의 선정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상욱(2002) 「NGO의 성장과 인적자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1(3).
- 경기개발연구원(1999). 『경기도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고혜원(2004).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2003).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광식(1999).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동명사.  
 \_\_\_\_\_(1999). 『한국 NGO: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동명사.
- 김동춘 외(2001).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 김동춘 편(2001). 『2001 NGO 리포트』. 아르케.
- 김미란(1998). 「시민·사회단체의 시민교육 현황 분석」. 이화여대 사회복지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호(2001a). “시민사회단체 주도 사회교육 활동 법제화의 의미”. 부산청년 정보문화센터. <http://asia.skhu.ac.kr>.
- \_\_\_\_\_ (2001b). “시민사회단체 주도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부산청년정보문화 센터. <http://asia.skhu.ac.kr>.
- 김병완·민현정(2002). 「한국 NGO의 역할유형에 관한 경험적 분석: NGO 활동가들의 자기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4).
- 김의욱(2001).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부산청년정보문화센터. <http://asia.skhu.ac.kr>.
- 김창엽(2000). 「시민운동단체의 사회교육에 대한 고찰」.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홍(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
- 박경래(2001).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석(2003). 『민주시민교육』. 탐메타플렌.

- 서춘식(2002). 「한국 NGO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7(2). 조선대학교.
- 손동빈(2000). 「시민 사회단체를 통한 학교 시민윤리교육 활성화와 그 실천사례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0집.
- 송영선(2002). 「NGO지도자의 사회적 배경과 활동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기완·김은일(1996). 「일본 NGO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일고찰」. 『한국정원학회보』, 14(1).
- 안봉태(2001).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과 교육부문 NGO의 대응에 관한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난주(2002). 『7명의 현장활동가가 쓴 NGO 실무핸드북』. 아르케.
- 오경식(2001). 「NGO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훈 외(2002). 『저소득층 자활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과 고용연계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팔무(1998). 「비정부사회운동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시민운동과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10(2).
- 유현석(1999). 『NGO 그리고 국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례를 통해 본 NGO의 역할에 관한 고찰』.
- 이영안(2003). 「시민교육과 NGO」. 경희대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학(2001). 「한국 NGO의 활동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용(2001). 「NGO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국정홍보처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이해주(2002). 「NGO와 사회교육의 연계를 위한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8(2).
- 이혜경((2002). 『자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희숙(2001). 「참여민주적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숙명여



- 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해황(1998.6). 「민간운동단체 지도자 육성방안- 대전광역시 민간운동단체 지도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학회지』, 제8집.
- 정근모 외(2001). 『비영리단체·비영리기구의 전략 경영과 기금 개발』. 예영 커뮤니케이션.
- 조금주(2000). 「NGO활동을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교육사회학 연구』, 10(1).
- 주성수(2001). 『시민사회와 NGO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 주성수·남정일·이남석(2003). 『한국NGO 리포트 2002-2003』. 한양대학교 출판부.
- 주성수 외(2003). 『한국 NGO 리포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최창식(2002). 「NGO에 관한 연구: 한국 NGO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UNESCO(1999). 직업기술교육에 관한 국제 NGO 포럼.
- 한국NGO총괄위원회(2003). 『한국NGO총람』.
- Kathryn McMullen, Richard Brisbois(2003). "Coping with chang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Canada's non-profit sector". *CPRN Research series on Human Resources in the Non-profit Sector*.
- Yoon, Soonchul(2003). *Study o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NGO, Korea*. KDI Graduate School.

▣ 저자 약력

- **이의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고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NGO의 교육훈련사업 실태와 과제

- |         |   |
|---------|---|
| · 발행연월일 | 2004년 9월 25일 인쇄<br>2004년 9월 30일 발행  |
| · 발행인   | 김 장 호   |
| · 발행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br>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br>홈페이지: <a href="http://www.krivet.re.kr">http://www.krivet.re.kr</a><br>전화: (02)3485-5000, 5100<br>팩 스: (02)3485-5200 |
| · 인쇄처   | KPM (02)2263-8015   |
| · 등록일자  | 1998년 6월 11일  |
| · 등록번호  | 제16-1681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가 5,000원>